

201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6. 5

기 획 재 정 부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기 금 운 용 평 가 단

# 201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6·5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한국조세정연구원

# 목 차

<b>I. 2016년 기금존치평가 개요</b> .....	<b>1</b>
1. 평가의 목적 .....	1
2. 평가의 근거 .....	1
3.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및 운영 .....	1
4. 기금존치평가 방법 .....	4
5. 평가 대상기금 .....	7
<b>II. 2016년 기금존치평가 평가결과 종합</b> .....	<b>8</b>
1. 2016년도 평가 개요 및 특징 .....	8
2. 평가결과 .....	9
<b>III. 2016년 기금존치평가 결과</b> .....	<b>14</b>
<b>【기획재정부】</b>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18
<b>【미래창조과학부】</b>	
2. 과학기술진흥기금 .....	27
<b>【문화체육관광부】</b>	
3. 국민체육진흥기금 .....	38
4. 문화예술진흥기금 .....	44
5. 지역신문발전기금 .....	52

**【농림축산식품부】**

6. 축산발전기금 ..... 67

**【보건복지부】**

7. 응급의료기금 ..... 77

**【환경부】**

8. 금강수계관리기금 ..... 87

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93

1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100

11. 한강수계관리기금 ..... 107

**【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진흥기금 ..... 117

1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124

**【여성가족부】**

14. 양성평등기금 ..... 135

15. 청소년육성기금 ..... 143

**【금융위원회】**

16. 기술신용보증기금 ..... 155

1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161

1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169

1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175

**【국가보훈처】**

2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184



# I. 2016년 기금존치평가 개요

## 1. 평가의 목적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금 제도개선 및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부담 경감에 기여함.

## 2. 평가의 근거

- 국가재정법 제 82조 제1항에 의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함.
  - 이를 위해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심사) 및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에 의거하여 기금별 존폐 기준을 확립함.

## 3.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가. 추진경과

- '16년도 평가지침 통보(기획재정부 → 각 부처, '14.12월)
- 기금별 조사·평가 자료 접수('16.2.28일)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16.3.15~3.30일)
- 중간보고서 작성완료 및 기금 검토의견 수렴('16.4.19~4.21일)
- 기금운용평가보고서(안) 제출('16.5.13일)
- 재정정책자문회의 서면자문('16.5.12~5.17)
- 차관회의('16.5.19), 국무회의('16.5.24) 보고 후 국회제출('16.5.31)

## 나. 기금운용평가단 명단

○ 기금운용평가단은 단장 및 자산평가반, 존치평가반 등으로 구성됨.

### <2016년 기금운용평가단>

구분	성명 (출생)	소속 및 직위	학력 및 주요경력
단장	연강흠 (1956)	연세대 교수 (경영학)	펜실베이니아대 박사(경영학) 前)한국재무학회 회장

#### 【자산운용평가반】

팀장 (4)	박영규 (1963)	성균관대 교수 (경영학)	조지워싱턴대 박사(경영학)
	정재만 (1967)	숭실대 교수 (금융학)	서울대 박사(국제재무)
	주상영 (1964)	건국대 교수 (경제학)	위스콘신대 박사(금융경제학) 前)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재현 (1969)	국민대 교수 (경제학)	UCLA 박사(경제학) 前)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팀원 (9)	김상배 (1968)	경북대 교수 (경영학)	호주 모나시대 박사(재무관리)
	김우진 (1970)	서울대 교수 (경영학)	일리노이대 박사(재무관리) 前)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
	김철배 (1962)	금융투자협회 전무	연세대 학사(법학)
	여윤경 (1967)	이화여대 교수 (경영학)	오하이오대 박사(경영학)
	여은정 (1973)	중앙대 교수 (경영학)	미시간대 박사(경제학) 前)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서 (1968)	동국대 교수 (경영학)	시러큐스대 박사(재무관리)
	이형오 (1964)	숙명여대 교수 (재무회계)	도쿄대 박사(경제학)
	최형석 (1974)	이화여대 교수 (경영학)	조지아텍대 박사(경영학)
	허석균 (1970)	중앙대 교수 (경영학부)	시카고대 박사(경제학) 前)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구분	성명 (출생)	소속 및 직위	학력 및 주요경력
----	------------	---------	-----------

**【기금존치평가반】**

팀장 (2)	윤 덕 룡 (195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el대(독일) 박사(경제학)
	홍 세 준 (1963)	고려대 교수 (경영대)	카네기멜론대 박사(경영학)
팀원 (10)	김 동 회 (1969)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서울대 석사(경영학)
	서 준 섭 (1966)	비온드플랫폼 대표	前)삼일회계법인 전무
	강 신 욱 (19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박사(경제학)
	고 선 (1974)	중앙대 교수 (경제학)	캘리포니아대 박사(경제학) 前)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봉 근 (1965)	서울대 교수 (경제학)	미시간대 박사(경제학)
	김 성 훈 (1974)	충남대 조교수 (농업경제학)	퍼듀대 박사(농업경제학)
	김 인 무 (1958)	성균관대 교수 (경제학)	플로리다대 박사(경제학)
	라 휘 문 (1964)	성결대 교수 (행정학)	성균관대 박사(행정학)
	박 선 희 (1967)	조선대 교수 (신문방송학)	서울대 박사(언론정보학)
	서 경 란 (1974)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박사(경영학)



## 4. 기금존치평가 방법

### 가. 평가지표의 구성

○ 존치평가지표는 개별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등 3개의 지표로 구성됨.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지표는 기금이 수행하는 모든 개별사업에 대해 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

- 개별사업의 설치근거(법령, 규정 등), 사업의 중장기운영계획과 목적간의 일관성, 목적달성 가능성 등을 평가
- 개별사업의 계량화된 수치(비용편익분석 등), 정성적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예산 또는 민간으로 전환이 불가능한지 여부 평가
- 예산, 타 기금 등과의 역할분담 원칙 및 기준을 근거로 기금의 개별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의 존재유무를 평가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지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이 보유해야 할 규모에 대해 2개의 세부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

- 기금의 자체수입비중,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을 평가
-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기금 규모를 산출하여, 현재 기금 규모와 비교·평가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지표는 기금목적의 유효성 및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을 평가

- 기금의 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하며,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한 지에 대해 평가
-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지에 대해 평가
-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

○ 각 평가지표는 지표별로 구성된 세부평가지표 안에 제시된 <평가내용>과 <작성내용>으로 구성됨.

- <평가내용>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평가의 목표와 기준을 설명

- <작성내용>은 각 평가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 나. 평가결과

○ 평가결과는 세부평가지표별 평가에 따라 개별사업의 적정성, 자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에 대해 각각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기금의 종합적인 총평을 제시함.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 (사업)존치/개선/이전/통합/폐지

- ② 자원구조의 적정성 : (중기가용자산 규모)적정/과다/과소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존치/조건부존치/통합/폐지

## 다. 평가결과 후속조치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에 대해 추진사항 및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최소 반기)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금 또는 기관 전용 홈페이지에 공시함.

- 특히,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예정

# 참고 1

# 기금 존치평가 기준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①-1 사업설치 목적의 유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사업의 설치목적 및 추진근거가 명확한가?</li> <li>ii.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나 방향이 당초 또는 변경된 설치목적과 일관적인가?</li> <li>iii. 사업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가?</li> </ul>
	①-2 사업주체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사업을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으로 집행할 경우 적절한 집행이 불가능한가?</li> <li>ii. 사업을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가?</li> </ul>
	①-3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li> <li>ii. 타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li> </ul>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②-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평가전년도 자체수입이 [사업비+기금운영비+공자기금이자상환+차입금이자상환]의 2/3 이상인가?</li> <li>ii. 평가년도 계획 상 총 수입에서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하인가?</li> <li>iii. 수익자, 원인자, 손피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재원이 없는가??</li> </ul>
	②-2 중기가용 자산규모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기금이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만큼 보유하고 있는가?</li> </ul>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③-1 기금목적의 유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경제 · 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효한가?</li> <li>ii.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설치목적 달성에 적합한가?</li> </ul>
	③-2 타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가?</li> </ul>
	③-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li> </ul>

## 5. 평가 대상기금

- (기금존치평가부문) 총 65개 기금 중 24개 기금에 대하여 평가함.
  - 2013년 평가 시 대면심사를 실시한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함.
    - \* '13년 평가 시 서면심사만 실시한 기금은 '15년에 평가 완료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경우, 기금 존치여부에 대한 평가실익이 없어 과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서면심사만 시행함.

### 〈'16년 기금존치평가 대상기금 : 24개〉

유 형	기 금 명
존치1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축산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존치2팀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응급의료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II. 2016년도 기금존치평가 평가결과 종합

### 1. 2016년도 평가 개요 및 특징

- '14년부터 매년 1/3기금에 대해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존치평가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기준에 대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14년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15년, '16년에 각각 전체기금의 1/2 기금을 선정하여 평가를 시행함.
  - '15년 존치평가는 '13년 평가 시 서면심사 대상기금에 대해 시행하고, '16년 존치평가는 '13년 평가 시 대면심사 대상기금에 대해 시행함.
- 평가지표간 평가대상이 뚜렷한데도 평가결과는 종합적인 기금의 존치여부만 명시하여 세부 지표별로 정확한 의사전달 곤란하여, 각 지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함.
  - \* 기금의 존치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사업 및 재원구조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유도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 (사업)존치/개선/이관 및 통합/폐지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중기가용자산 규모)적정/과다/부족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존치/조건부존치/통합/폐지
- 평가의 주요 지적사항을 평가결과 요약표에 명시하여 개별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 2. 평가 결과

### 가. 개별사업의 적정성

○ 개별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24개 기금 중 5개 기금의 12개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① (폐지)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1개 사업 폐지 권고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직장여성 아파트 관리운영	폐지

② (개선) 사업수행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2개 사업 개선 권고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축산발전기금	축산물등급판정 지원	개선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저축장려금 지급	개선

③ (통합) 다른 사업과 유사성·중복성이 있어, 통합 운영 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9개 사업 통합 권고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국민생활체육회 운영지원	통합 (기금내)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우수선수 양성지원	통합 (기금내)
	체육인재 육성	
지역신문 발전기금	연수교육사업	통합 (타 기금)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스마트인프라지원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 나.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대상 19개 기금 중 9개 기금은  
과다, 4개 기금은 과소, 7개 기금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4대 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해당지표 비평가 대상임.

① (과다기금)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권고

### < 중기가용자산 규모 과다 기금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축산발전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공자기금 예탁 권고(2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공자기금 예탁 미권고(6개)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축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농특회계반환(3천억원) 후  
공자에탁에 대한 재검토 권고

② (과소기금)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업축소 검토 등 권고

### < 중기가용자산 규모 과소 기금 >

◇ 과학기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다.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5개 기금의 재원구조 및 기금존치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견되어 조건부존치, 통합 등을 권고함.
- ① (조건부존치) 재원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3개 기금 및 사업의 수행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1개 기금에 대해 조건부존치 권고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양성평등기금	수입의 대부분을 복권기금에 의존 (‘15년 양성평등 93%, 청소년육성 83%) → 자체 재원확보 및 사업구조조정 필요	조건부존치
청소년육성기금		조건부존치
과학기술 진흥기금	수입의 89%(‘15년 기준)를 일반회계와 복권기금에 의존 → 자체 재원확보 및 사업 구조조정 필요	조건부존치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사업실효성이 낮고, 관리주체(금융위)의 관리가 소홀하여 기금목적 달성 곤란 → 지원대상과 수준방식 개선 필요	조건부존치

- ② (통합) 기금의 설치목적과 수행사업이 유사한 1개 기금 통합 권고

기금명	사유	평가결과
지역신문 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과 목적 및 사업이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효율성제고를 위해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운영 필요	통합

## 라. 4대 연금성기금 존치평가 결과

- 4대 연금성\* 기금은 연금급여지급 외에 추가적인 기타사업을 수행할 유인이 타 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13년 평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미 실시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13년 평가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만 점검하고, 신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시행함.



- 연금성기금은 영속적인 기금적립을 통해 연금급여충당이 주요목적으로서 과도하게 기금의 규모를 증가시킬 유인이 적고, 설치목적이 명확하여 존치여부에 대한 평가 실익이 미미해 ‘[2]-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과 ‘[3] 기금존치의 타당성’ 지표는 평가를 면제함.
- 4대 연금성기금은 과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적절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규 사업은 국민연금기금(4개)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1개)만 존재하며 해당 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민연금기금의 신규 사업인 ‘국민연금사각지대축소’, ‘국민연금수급권확인’, ‘국민연금장애심사’, ‘노후준비서비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고객지원’ 사업의 경우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업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Ⅲ. 2015년 기금별 기금존치평가 결과



# 기 획 재 정 부



#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설치년도	1994년	운용개시년도	1995년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기금관리주체	기획재정부
관리방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함.
중기가용자산 적정	중기가용자산은 적정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SOC보증사업과 SOC보증대위변제사업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금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가 타당함.

### 3. 존치평가 총평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SOC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SOC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사업은 SOC보증 및 이와 연계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SOC보증 대위변제 사업이 있다. SOC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구상권관리비, SOC보증대위변제, 면허료 및 수수료 환급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대위변제가 기금설립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SOC보증 대위변제사업은 기금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기금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SOC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설치 목적이 유효하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본 기금을 관리·운영한다고 제시되어 있어 사업주체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와 운영기간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보다는 기금형태의 운영이 적정하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비영리사업으로 사업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시장실패 보완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으로의 전환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기금의 자체수입 비중과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며 중기가용 자산규모도 적정하다. 본 기금은 향후 사업지출의 증가 계획에 따라 정부출연금 보조도 일정기간동안 계획되어 있으나 연간 보증공급의 목표 설정, 보증잔액의 추이,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운용배수 수준으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본 기금의 주요사업인 SOC보증사업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자(SPC)에 대한 보증업무로써 타 기금 및 타 기금의 주요 사업과 유사성·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복지 분야 등 정부의 주도적인 시설확충 계획 없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시설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SOC보증사업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SOC보증의 대부분이 도로·항만·철도 등 기간망에 집중되어 있는 등 SOC보증사업에 대한 유형별 중장기 포트폴리오 계획 수립이 시급하고,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SOC보증 사업의 부실방지, 부실징후사업에 대한 리파이낸싱, 사업재구조화 등 SOC보증 대위변제 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사회 기반 시설확충에 기여하고, 국민의 편익증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사업 및 기금의 설치목적이 부합함.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SOC신용보증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제32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SOC보증사업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등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방향과 기금 설치목적 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추진 성과 및 실행과제별 성과지표 등에 의거하여 상시적인 점검과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 사업은 계량적·비계량적인 측면에서 모두 설치목적 달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 재정 부담 완화·사회기반시설 확충·경제 활성화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목적의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의 핵심사업인 SOC보증사업은 1994년 설립이후 2015년까지 19.3조원의 보증을 지원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민간투자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음.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SOC보증사업의 보증 사업 유형이 철도·항만·도로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SOC보증사업의 유형별 포트폴리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제성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 사업 등이 경쟁적으로 계획되고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 자체적으로 보다 정밀한 경제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결정에 있어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본 기금은 SOC보증사업 외에 SOC보증대위변제사업(구상권관리, SOC보증대위변제, 면허료 및 수수료 환급)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1건(600만원)의 구상권 관리비 외에 SOC보증대위변제사업 등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Clean 기금으로서 실질적인 SOC보증대위변제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기금은 2015년말 8.3조원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국내외 경기의 저성장 등을 고려할 때, SOC보증사업의 사후관리와 부실징후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SOC보증사업의 부실방지, 부실징후사업에 대한 리파이낸싱, 사업재구조화 등 SOC보증대위변제 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은 SOC보증사업과 SOC보증대위변제사업 외에 금융컨설팅과 제도연구 및 개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들 사업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제고는 물론 공무원의 전문성 및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아직까지 그 횟수가 제한적이고 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이들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사업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본 기금은 대규모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시장참여자의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SOC보증은 사업 당 보증규모(보증한도 4,000억원)가 크며, 20~30년 이상 장기 보증의 특성을 가지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규모와 운영기간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규모 자금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프로젝트 금융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한 기금사업으로써의 운용이 적합함.

- 본 기금은 대규모 재원조성이 어렵고 손실위험이 큰 비영리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어려우며 정부 정책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 특히 대규모 재원조달이 가능하더라도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민간기관의 시장 이탈이 예상되어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민간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의 사업대상은 타 기금이 보증하는 기업 또는 개인금융과 그 금융방식이 매우 달라 기금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타 기금사업과 사업목적의 차이가 분명하며 지원대상인 특수목적법인(SPC)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은 영위할 수 없어 중복될 가능성이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적정함.
  - 수입재원은 신용보증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료수입,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은 적정함.
  - 정부 내부수입은 180억원이며 이는 향후에도 일정기간 유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기금의 사업 및 지출 규모에 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 검토 필요함.
- 재원과 목적사업간의 연계성은 기금의 지출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함.
  - 본 기금은 향후에도 사업 지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정부분 정부 출연금이 보조되어야 적정 중기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추가적인 정부출연을 고려하기 전에 연간 보증공급의 목표 설정, 보증 잔액의 추이,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운용배수 수준으로 관리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동일 기업 당 보증한도가 4,000억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1건의 부실로도 기금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보증심사 및 부실채권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설립이후 19조 3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도로·철도·항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개선하는 등 산업기반보증지원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이러한 목적의 기금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 복지분야 등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로 사회기반시설 관련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금의 역할 확대가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변화된 환경에서도 기금목적은 여전히 유효할 것임.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고유의 업무영역을 보유하고 있어 타 기금과의 중복성과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미래창조과학부



## 2. 과학기술진흥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설치년도	1992년	운용개시년도	1992년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기금관리주체	미래창조과학부
관리방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재원조성 방법은 적정함.
중기가용자산 과소	중기가용자산이 매우 부족하므로 사업 정리 및 일반회계 이관이 시급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조건부존치	국가 과학기술문화 창달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기금의 존치 타당성은 인정되나 기금재원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여 그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 없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기금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3. 존치평가 총평

-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의 진흥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효율적 지원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1992년부터 설치, 운용되어 왔다. 본 기금은 현재 과학기술기반조성,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문화창달의 3개 프로그램에 관한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까지 3조 8,89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는 복권기금전입금, 용자원리금, 기술료 등이며 이 중 용자원리금, 기술료 수입은 점차 감소하여 복권기금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재정구조이다. 본 기금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유일하는 기금이며 예산사업 및 타 기금사업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조정 및 이관 등을 추진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본 기금은 복권기금전입금이외 재원이 많지 않고 기금 수입의 규모 또한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업의 범위와 규모의 최적화, 효율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2013년의 존치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라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예: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 사업, 기술사기술향상교육훈련 사업)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개별사업 내용 중 사업성과가 미약하거나 유사성과 중복성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업내용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지원사업들은 사업내용의 개선을 통해 기금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복권기금전입금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기가용자산이 매우 부족하며 정부의 미상환 차입금 규모도 상당한 바 기금의 자체재원 확보, 핵심목적사업위주로 한 기존 사업의 축소 및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추가재원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의 재원부족 상황이 지속되면 의미 있는 사업의 개발과 추진이 어려워 기금으로 존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본 기금이 지난 20여 년간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최근 수년 간 국제과학경쟁력 지표(예: IMD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위상이 이미 크게 향상되었음을 감안할 때 기금의 최초 설립 목적 및 사업 분야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2007년, 2010년, 2013년의 기금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부분이며 기금의 목적이나 사업방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공계 기피현상 개선이나 이공계 일자리창출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일부 기금 사업의 목적으로 수년째 서술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의 경우는 그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기금의 성격과 재정 상황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진행하는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 본 기금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금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저변확대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존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 수입의 규모와 전망에 따라 사업범위 및 규모의 재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재정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가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의미 있는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 조건부 존치로 평가한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사업과 우수과학자포상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과학문화확산사업의 설치목적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개선 노력은 필요함.
-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그 취지와 공공성은 인정하지만 타 학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학계 간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등에 대한 확대 지원을 고려해야 함.
- 과기금의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에 대해 타 학문분야와의 형평성이슈가 제기 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지원에 대한 정당성 충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우수과학자 포상사업은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 하지만 기금이 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시상제도의 개선 노력, 예를 들어 시상금의 규모보다는 명예를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유도나 유사 시상제도의 통합을 통한 사업 효율성의 제고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시상 직후에 시상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함.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시급해 보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를 가져오는지 판단이 쉽지 않음. 사업의 성과로 제시한 여성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고용 규모 증가, 여성 이공계 박사 연간 1,000명 이상 배출 등 기금이 제시한 내용 (136쪽)과 사업과의 인과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움.

- 과학문화확산사업의 설치목적으로 “국민생활과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 환경 및 기반 조성”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내용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임. 사회배려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과학기술 환경제공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더 광범위한 차원의 사업이 목적인지 현재의 사업 내용으로는 그 경계나 방향이 모호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이용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반영한 설치목적의 수정이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하 과기총) 지원사업은 기금에서 적시한 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사업내용의 수정과 개선, 추가 재원확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과기총 지원사업은 그 목적과 내용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정되지만 현재의 기금 재정상황으로는 수적으로 증가하는 이공계 학술단체와 학술지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업 내용의 수정과 개선,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국가간 기술상호인정추진사업은 명칭을 시급히 변경하고 현재의 사업내용에 걸맞은 사업 목표와 객관적, 과학적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반드시 개발할 것을 권고함.
  - 보고서에는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사업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어 사업 내용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었음.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우수과학자포상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과학문화확산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타 학문분야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함.

- 왜 아태이론물리센터만을 기금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방식 개선 등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과학영재교육기관지원사업은 과학기술영재의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추세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풍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향후 본 기금보다는 예산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기금의 재정상황이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기대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 중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 지원사업과 과총 사업 등은 유사 사업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사업명 및 사업내용을 조정할 것을 권고함.
- 한림원의 과학기술정책연구 및 자문사업은 과총의 과학기술정책현안 조사자문 사업 내의 일부사업과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업명 및 사업내용을 조정할 것을 권고함.
-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은 사업명이 유사하여 중복성 및 유사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업명 및 지원대상을 조정할 것을 권고함.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적정함.
- 본 기금은 출자수입, 기술료수입 등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복권기금 전입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복권기금의 의존도는 더욱 높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기금조성 재원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은 적정함.
  - 지금의 상태에서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나 본 기금은 과거의 정부차입금으로 인하여 향후 상환하여야할 금액이 상당한 수준(약 2천억)임.
- 복권전입금은 기존 기술개발복권과 동일한 성격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여타의 재원도 기금의 지출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정부 차입금으로 인하여 중기 가용자산이 마이너스(-)에 이르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재고가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기금은 지출규모의 축소와 함께 기금의 핵심목적 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과 자체재원 확보 마련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과학기술진흥과 과학문화확산은 경쟁시장원리 도입이 쉽지 않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감안 할 때 기금목적의 유효성은 타당함.
  - 하지만 일부 사업들의 목적이 시장 및 기술적 환경관련 시류변화에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함께 탄력적으로 운영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사업의 세부사업 목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기금의 전반적인 효용성과 건전성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세부 사업들의 효용성과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재육성관련 사업이나 과학기술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장기간, 안정적이고 풍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므로 본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지 세심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 기금의 공익적 유효성은 매우 중요하게 인정되지만 기금의 재정규모가 축소되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의 유지를 위해 본 기금의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이 정책적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기금과 과학기술이 처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기금의 사업 구성도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법률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 아울러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마련할 수 있는 자체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한번 위축되기 시작한 본 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복권기금에만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국격에 어울리는 과학기술의 대표기금으로 발전시켜야 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2013년 준차평가 지적에 따라 중복성·유사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일부 개별사업에서 중복성과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임.
- 지속적으로 해당 기금과 예산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정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타 기금이나 예산사업과의 유사성, 중복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통합, 이관하는 노력이 바람직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 3. 국민체육진흥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설치년도	1972년	운용개시년도	1989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국민생활 체육회 지원,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통합 (기금내)	체육회 통합으로 단체운영 지원 사업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우수선수 양성지원, 체육인재육성	통합 (기금내)	체육영재 육성이라는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재원조성 방법은 적정함.
중기가용자산 적정	중기가용자산은 적정하나 재원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투표권 수입 정산시점 단축을 권고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기금 설치목적이 구체적이고 기금목적 달성의 실효성이 명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금목적의 유효성이 높은 기금으로 평가함.

### 3. 존치평가 총평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서울올림픽 잉여금과 국민체육진흥재단 기금을 발족기금으로 설치되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다. 기금의 조성은 정부출연금, 광고사업수입금, 회원제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체육진흥투표권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경륜경정전입금 등에 이자수입, 투자사업 운영수입을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기금 설치 목적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과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체육육성 관련 14개 사업, 전문체육육성관련 11개 사업,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관련 17개 사업, 장애인체육육성 관련 2개 사업 등 총 44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의 개별사업 적정성 평가결과 사업개선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 외 세부사업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지원이라는 기금설치 목적이 유효하다. 체육회 통합에 따라 사업간 조정 및 통폐합이 필요하며, 체육영재 육성 관련 2개 사업 등 일부 유사성이 있는 사업들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경륜 경정, 체육진흥 투표권 판매수익금 등으로 자체수입 비중 및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며 현재의 중기가용자산도 적정하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투표권 정산시점 차이로 인하여 미수채권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기금의 적정 중기가용자산의 유지를 위하여 투표권 정산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고한다.
- 본 기금은 일부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면 기금 설치목적이 구체적이고 기금목적 달성의 실효성이 명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금존치의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본 기금의 세부사업들을 수혜대상, 운영기관지원, 시설관리 등으로 분류하는 등 사업간 중복성을 피하도록 사업들을 위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대국민 인지도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사업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의 44개 세부사업 중 사업 개선이나 조정이 필요한 아래의 세부사업들을 제외한 사업들은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설치목적이 유효함.
- 생활체육육성관련 세부사업들을 수혜대상, 운영기관지원, 시설관리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생활체육육성관련 세부사업들은 모두 14개로 세부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있지 않아 사업간 중복성을 피하기 어려우며, 사업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체육진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부사업들을 위계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사업(청소년팀스포츠), 체육문화예술사업지원사업(학교스포츠클럽),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 사업(유소년축구센터) 등은 수혜대상이 청소년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세부사업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사업간 조정이 필요함.
- 체육용구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스포츠산업 트렌드에 따라 기술개발, 품질인증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여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체육용구산업체에 집중 지원하도록 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생활체육육성 사업, 전문체육육성 사업,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사업, 장애인체육육성 사업 등 총 44개 세부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본 기금의 사업들은 기금의 설치목적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이므로 민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의 44개 세부사업 중 사업간 통합이 필요한 아래의 세부사업들을 제외한 사업들은 예산·타기금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음.
- 체육회 통합으로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주관 사업간 조정 및 통폐합이 필요함.
  - 국민생활체육회운영 지원 사업과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우수선수양성지원 사업과 체육인재육성 사업은 우수선수 및 체육영재를 육성하는 전문체육육성 사업들로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사업간 통합을 권고함.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적정함.
  - 본 기금은 경륜 경정, 체육진흥 투표권 판매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 수입 비중은 적정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바 기금재원의 안정적인 수익은 확보되어 있음.
-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정부의 내부수입 및 차입금은 없으나 기금의 건전성은 양호함.
-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은 기금의 지출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함.
  -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투표권 판매수익금 정산 시점이 연 1회로 되어 있어 미수채권의 규모가 1조원을 넘는 등 기금의 유동성 관점에서 중기가용자산이 적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미수금의 정산시점을 년 단위에서 분기 단위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함.
  - 아울러 기금의 사업 중 용자사업의 경우 적정 중기가용자산의 유지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으로 사업을 전환할 것을 권고함.

## 3.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육성’, ‘전문체육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장애인 체육 육성’의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4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 설치목적이 구체적이고 기금목적 달성의 실효성이 명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금목적의 유효성이 높은 기금으로 평가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분야 유일의 기금으로 사업의 영역과 내용면에서 타 기금과 중복성·유사성이 낮은 기금으로 평가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4. 문화예술진흥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2337호)		
설치년도	1973년	운용개시년도	1973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미흡	본 기금 자체수입의 46%는 복권기금전입금(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금액)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복권기금전입금을 자체수입에서 제외할 경우 자체수입 비중은 37%로 저조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 규모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기반이 미흡함. 또한, 본 기금의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수입기반 확충 및 사업비 규모의 재검토를 포함한 중기재원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중기가용자산 적정	본 기금의 재원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뉴서울CC의 현실적인 매각방안 수립, 보유사업자산의 국유재산 귀속방안 협의를 권고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p>본 기금은 목적의 유효성이 여전히 인정되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2013년 기금존치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기금보유 골프장 매각의 적극적인 추진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성방안이 필요함.</p>

### 3. 존치평가 총평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재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8852호)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의 세부적인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2016년 현재 4개의 단위사업내에 7개의 세부사업, 15개의 세세부사업, 41개의 기초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예술창작 역량강화,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등으로 분류된다.
- 본 기금의 사업들은 경제성장 및 개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문화수요의 자연적인 확대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업수가 증가하거나 대상이 확대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 들어 기금이 주도적으로 문화수요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적절한 사업의 개발 및 운영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여전히 본 기금의 설치목적의 실효적인 달성을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자체수입기반이 취약하며 중기재원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기금의 필수사업비는 과거 5개년동안 연평균 18% 증가하였고 중기수지추계에서도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향후 사업비의 부족재원을 뉴서울CC 매각,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일반회계전입금 출연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등 기금의 목적사업과 실제 재원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 규모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입기반 확충 및 사업비 규모의 재검토를 포함한 중기재원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기금의 재원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뉴서울CC의 현실적인 매각방안 수립, 보유사업자산의 국유재산 귀속방안 협의를 권고하는 바이다.
- 소득증가와 사회발전으로 문화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사업을 통한 시장실패의 영역의 보완 기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

□ 본 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이 시행하는 사업수가 자연발생적인 수요확대에 순응하여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원로연극제, 원로금빛제전사업 등은 관련 공연예술창작지원 기초사업들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수혜대상의 선정 및 운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전반을 체계화하고 기존의 사업들 중 합목적적인 연계성이 높지 않은 사업은 정리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기금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예술인력개발원 사업은 문화예술 기획이나 경영인력의 수요확대를 반영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자생역량강화를 도모할 것을 권고한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원로연극제, 원로금빛제전 등의 기초사업은 다른 예술 창작지원사업내의 기초사업들과 다르게 특정 대상에 대한 특혜적인 성격의 사업이라는 우려가 있어, 기타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에 통합하여 실효적인 운영을 권고함.
  - 동 사업들은 수혜대상을 국한한 것은 다른 공연예술창작육성 지원사업들에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국제예술교류지원, 기타 예술창작지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등은 기금의 목적과 합목적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기사업들은 합목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사업 내 개별 기초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합목적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정리하여 기금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정 사업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 주체의 적합성

- 예술창작역량강화,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등의 사업주체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며, 미술관 운영과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등도 사업주체로서의 기금의 적합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미술관이나 인력개발원의 운영의 합목적성은 인정되나, 이들 사업의 보유사업자산에 관해서는 국유재산 귀속방안 협의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한 방안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
- 예술창작 및 발표공간지원,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지원, 공공미술사업운영 등은 민간이나 다른 공공 기관이 그 역할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상기 사업들은 문화수요 중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부문에 집중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공적 성격의 기금이 그 시행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대부분의 개별사업내용이 다른 기금이나 기관의 사업과 중복성이 없이 고유의 사업내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기금은 문화예술분야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기금으로 예산사업과의 중복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자체수입기반이 취약하며 중기재원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 본 기금 자체수입의 46%는 복권기금전입금(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금액)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복권기금전입금을 자체수입에서 제외할 경우 자체수입 비중은 37%로 저조하게 분석됨.
  - 본 기금의 필수사업비는 과거 5개년동안 연평균 18% 증가하였고 중기수지추계에서도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향후 사업비의 부족재원을 뉴서울CC 매각,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일반회계전입금 출연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본 기금은 2016년 뉴서울CC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지추계상 1,4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액은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1,000억 원, 자체보유자금 400억 원으로 충당할 예정임.
  - 본 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 규모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입기반 확충 및 사업비 규모의 재검토를 포함한 중기재원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25%로서 적정하지만 2016년 뉴서울CC 매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47%로 급증함.

- 본 기금의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등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기준으로 본 기금의 자체수입 중 복권기금전입금(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금액)과 경정경륜전입금이 54%를 차지하며, 중기수지추계상 일반회계전입금 등 정부내부수입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등 기금의 목적사업과 실제 재원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은 뉴서울CC(약 2,700억 원), 아르코 예술극장 등 사업자산(약 1,800억 원 규모) 등 총 4,50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재원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뉴서울CC의 현실적인 매각방안 수립, 보유사업자산의 국유재산 귀속방안 협의를 권고함.
- 뉴서울CC의 매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본 기금의 매각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세를 반영한 매각금액 재산정 등 현실적인 매각방안 수립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은 아르코 예술극장 등의 사업자산을 보존가치가 있는 필수보유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기금 부족상황에서 본 기금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존가치가 있다면 국유재산으로 귀속(양도)하고 임차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대부분의 분야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기금의 존치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며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본 기금은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서 향후 기금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다 더 안정적인 기금 재원확보 방안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됨.
- 동 기금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그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증가나 가구구성변화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려한 핵심 사업의 지속적인 개편 등 매우 역동적인 기금운영이 요구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문화예술 관련 기금으로 문화 전 분야를 지원하는 기금은 본 기금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타 기금과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5. 지역신문발전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설치년도	2004년	운용개시년도	2005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관리방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연수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이관 (타기금)	언론진흥기금의 조사연구 사업과 유사하므로 언론진흥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을 권고함.
기사자료디지털화 지원	이관 (타기금)	언론진흥기금의 뉴스콘텐츠디지털화 사업과 유사하므로 언론진흥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을 권고함.
스마트인프라지원 (공용DB화지원)	이관 (타기금)	언론진흥기금의 통합관리시스템운영 사업과 유사하므로 언론진흥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을 권고함.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이관 (타기금)	언론진흥기금의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언론진흥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을 권고함.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이관 (타기금)	언론진흥기금의 NIE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언론진흥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을 권고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미흡	재원조성방법은 미흡함.
중기가용자산 과소	중기가용자산은 과소함.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통합	언론진흥기금의 사업들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기금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3. 존치평가 총평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본 기금은 2005년 250억 원의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되었는데, 기금 설치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이 총 940억원이었으나 2006년 이후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특별법이 개정되어 2022년까지 6년 연장되었다. 본 기금은 열악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사업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본 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으로 단일화하여 기획취재지원 사업, 지역여론활성화지원 사업, 연수교육사업 등 저널리즘역량 강화사업 3개,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사업, 공용DB화지원 사업, 취재장비임대 사업 등 스마트미디어인프라구축 사업 3개,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사업,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사업 등 공익성활동강화 사업 2개로 총 8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금관리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기금위탁관리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

□ 본 기금은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여론 다양화라는 기금 본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만, 공익성 활동강화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미디어 인프라구축 사업을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모바일 뉴스유통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확장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게 세부 사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세 가지 성과평가지표는 보다 적절하게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며,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콘텐츠 질 제고 등 지역신문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우선지원대상자 수를 줄이고 실질적인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신문 산업에 대한 지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예산사업이나 민간사업보다는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나 지역신문모니터링 사업은 지역 언론시민단체와 전문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계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기금의 사업들은 언론진흥기금의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이 많아 통합이 필요하며, 지역신문사의 낮은 경쟁력을 감안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일정비율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수입을 전적으로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바 지출 대비 자체 수입 비중과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은 매우 미흡하다. 아울러 중기가용자산도 매우 부족한바 향후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사업 지출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
- 본 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만 재정구조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목적 달성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목적의 유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본 기금은 지원 대상의 차이 외에 언론진흥기금의 사업목적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이 필요하다.
- 기금목적의 유효성과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본 기금의 존치 여부는 양가적 측면을 지닌다.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통해 여론을 다양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지역신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본 기금의 목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2년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을 포함한 전체 언론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된 사업이 많고 중복된 사업 중 언론진흥기금이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금 주체와 운영 주체, 관리 주체가 달라 기금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지원이 실제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의 기획취재지원 사업, 창의적 맞춤형 사업, 연수교육 사업, 지역여론 활성화지원 사업 등은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여론을 다양화하려는 기금 설치목적에 유효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주요 목적은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획취재지원 사업과 창의적 맞춤형 사업은 뉴스콘텐츠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수교육 사업 역시 저널리스트 교육을 통해 양질의 뉴스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함.
  -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사업인 지역신문 컨퍼런스 사업과 지역콘텐츠캠페인 사업은 기금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신문활용을 통한 미래독자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함.
- 공익성 활동강화 사업인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사업과 지역신문활용 교육지원 사업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유효하나 이들 사업은 지원사업의 성격으로 공익성 활동강화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의 스마트미디어인프라구축 사업은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유효하지만, 세부 사업인 공용DB화지원 사업, 취재장비임대 사업,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사업은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함.
  - 미디어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역신문 역시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이 절실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미디어인프라구축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뉴스제작에 초점을 둔 스마트미디어인프라구축 사업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모바일 유통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뉴스 습득은 주로 포털 앱이나 SNS 등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신문들은 이러한 뉴스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온라인 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기금의 유효성을 담지한 것으로 평가받는 창의적 맞춤형 사업 등의 성과확산을 위해서도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지역뉴스의 유통구조 마련 등 지역신문의 모바일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의 성과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적절한 성과평가를 위한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의 성과지표인 소외계층지원사업 구독자 만족도는 조사대상자 수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신문활용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NIE시범학교 담당교사 및 미디어강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학생들까지 포함시켜 조사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제 기금사업 참여 신문사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조사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전년도 우선지원신문사의 평균매출액은 미디어 환경 및 광고시장의 변화 등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수 있으므로 기금의 직접적 성과평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본 기금의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본 기금의 사업들이 지역기금의 설치목적에 유효한지를 점검하는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의 발전기반 조성 →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 독자 수 증가 및 지역신문 활성화라는 기금운용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 컨퍼런스 사업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으로 본 기금의 성과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이 운영된 지 10년이 지났고 특별법이 2022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이후의 사업을 위해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과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본 기금의 운영체계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실적이 좋은 우수 지역신문은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지역신문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신문 콘텐츠 질 제고를 통한 지역신문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 우선지원대상사 수를 축소하여 실질적인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해야 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본 기금의 기획취재지원 사업, 지역여론활성화지원 사업, 연수교육 사업 등 저널리즘 역량강화 사업과,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사업, 공용DB화지원 사업과 취재장비임대 사업 등 스마트미디어인프라구축 사업,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사업,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사업 등 공익성활동강화 사업은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신문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수익사업이 불가능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고려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지역신문 모니터링 사업은 지역 언론시민단체와 전문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음.
  - 본 기금의 지역신문 모니터링 사업은 기금위탁운영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운영기관이 사업평가 지표 중 하나인 지역신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성과 평가에 근거한 사업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역신문 모니터링 사업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어려우므로 지역 언론시민단체와 전문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언론시민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신문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지역신문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의 지역여론활성화지원 사업과 연수교육 사업은 타기금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음.
- 본 기금의 사업들 중 언론진흥기금과 지원대상이 다를 뿐 사업목적 및 취지가 동일한 사업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는 것을 권고함. 다만,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는 것이 사업중복성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사업운영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지역신문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일정비율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연수교육사업의 세부사업인 조사연구 사업은 지역신문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신문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 언론진흥기금의 조사연구사업과 유사함.
  - 조사연구 사업은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신문 현안이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역신문의 존립이 단순히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신문 산업, 나아가 미디어 산업 전체와 연계하여 지역신문의 지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 지역신문에 대한 조사연구는 미디어 생태계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럴 때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적 대안들도 마련할 수 있음.
  - 본 기금의 기사자료디지털화 지원 사업과 스마트인프라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공용 DB화 지원 사업은 언론진흥기금의 뉴스콘텐츠디지털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업과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본 기금의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사업은, 지역의 저소득층, 고령자 등 정보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신문을 보급함으로써 정보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신문의 인지도 및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진흥기금의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사업 중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본 기금의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사업은 언론진흥기금의 NIE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과 사업목적 및 취지가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NIE 수혜대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신문들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미흡함.
  - 2015년 자체수입은 6억원인 반면, 지출은 기금운영비 6억원과 사업비 94억원으로 자체수입비중은 6%로 매우 미흡함.
-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은 적정함.
  - 2015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1백억 원으로 수입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정부 출연금 250억 원으로 기금이 설치된 이후 동일한 상황임.
-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은 낮음.
  - 본 기금은 수입의 대부분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바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은 매우 낮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이 매우 과소함.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이 매우 부족한바 향후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입을 전적으로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수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신문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역신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기금의 목적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기금 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구조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목적의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본 기금의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사의 편집자율권 신장, 언론윤리 확립, 발행부수공사,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점은 인정되나, 본 기금을 운영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목적인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했는가에 대해서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함.
  - 지역신문의 콘텐츠 질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금 설치 목적인데, 일정 성과를 거둔 신문사도 있지만 지원대상 신문사간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콘텐츠 질 향상을 통한 지역신문 활성화에 기여했는가를 평가할 성과지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신문 산업의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지역신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적으로 정부출연금에 의존하는 본 기금의 재정구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정부출연금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함.
  - 지역 신문 산업의 특성상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지역신문 지면의 개선 등 가시적인 저널리즘 강화 효과가 있었다면 적어도 정부출연금의 확보는 수월하게 이루어졌을 것임.
  - 이것은 지역신문의 존재 자체만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역신문의 존재 타당성에 기대어 기금을 운용하는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함을 단적으로 환기시켜 줌.

- 지원사 선정 → 사업시행 → 성과관리 → 언론활동 반영과 같은 선순환구조를 마련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기금을 운영한다면 지역신문이 여론다양성에 기여하는 공론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목적의 유효성도 담보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세가지 성과지표인 소외계층지원사업 구독자 만족도, 지역신문 활용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전년도 우선지원신문사의 평균매출액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목적의 유효성을 검증할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절실히 요구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6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언론진흥기금과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사함.
- 2013년 기금준치 평가의 지적사항에 따라 언론진흥기금과 세부사업, 사업방식, 지원방식, 지원 대상 등을 조정하였으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이 지역신문이라는 것 외에, 조사연구사업, 기사자료 디지털화지원 사업, 공용 DB화 지원 사업,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사업,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사업 등 언론진흥기금과 유사한 사업이 다수 있음.
-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 주체가 분산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기금의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과, 기금의 자문·평가·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 관리·운용 수탁 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팀 등으로 분산되어 '선택과 집중'과 같은 기금지원 원칙을 견지하기 힘들고 기금 목적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본 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동 법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운영됨.
- 2015년부터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시 성과평가제 실시를 통한 기금사업의 효율성도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는 등 지원사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시점에서 기금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기금운용방식을 점검하고 기금의 존치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기금목적의 유효성과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치평가는 상반된 측면을 지님.
- 본 기금은 지역뉴스를 발굴하고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서 지역신문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금의 목적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신문을 포함하여 언론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된 사업이 있고, 중복된 사업 중에는 언론진흥기금이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언론진흥기금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업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농림축산식품부



## 6. 축산발전기금

###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축산법 제43조		
설 치 년 도	1974년	운용개시년도	1977년
주 무 부 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금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농협중앙회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 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함.
중기가용자산 과다	중기가용자산은 과다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자기금으로의 예탁은 권고하지 않음.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축산발전기금이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향후 축산시장개발 등 우리나라 축산환경을 어렵게 할 수 있는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 존치평가 총평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법 제43조에 의거하여 1974년 설치되어 197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설치목적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차입금, 대체초지조성비, 기금운용 수익금,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등이다. 기금의 용도는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가축 위생 및 방역,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등이다.
- 본 기금은 2015년 현재 18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적정하고 일부 사업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축산자조금사업,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사업, 축산물수급관리사업, 가축개량지원사업,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도축검사원운영사업,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 그러나 축산자조금사업, 축산물수급관리사업, 말산업육성지원사업,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도축검사원운영사업 등은 성과지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축산물등급판정지원사업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추진 하되, 축산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기금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적으로는 일몰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 기금은 민간 출연금, 용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수입 비중 및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나 중기가용자산은 과다하다.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자기금으로 예탁을 권고하지는 않으나, 용자사업에 대하여 이차보전 등과 같은 간접지원 형태로의 사업전환의 검토가 필요하다.
- 본 기금은 설치 이후 우리나라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FTA 대외시장 개방으로 축산 경영여건 악화, 악성전염병 발생, 친환경 축산업에 대한 수요증가 등과 같은 축산

환경의 변화는 축산발전기금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장개방 등과 같은 어려운 환경적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축산부문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축산발전기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살펴본 것과 같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축산관련예산의 80%를 축산발전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관련사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축산발전기금 관련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향후 존치가 불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수요의 증가는 예산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재원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통폐합 및 이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하여 현행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대다수의 사업에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는 지표들은 투입 또는 산출지표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과중심의 지표로 전환을 권고한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축산자조금, 축산물수급관리, 가축개량지원, 말산업육성지원,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산물이력제, 축산물 HACCP컨설팅, 도축검사원운영,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바 존치함.
-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
  - 축산자조금사업의 경우 성과평가지표인 주요축종 자조금 만족도가 69.1점으로 나타난 것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는바 원인을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축산물수급관리사업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보면 2014년 실적이 6.6%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14.1%로 설정하고 있는바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잘못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권고함.
  -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은 성과지표가 승마장수로 되어 있는바 이는 투입 또는 산출지표 중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지표 중심으로의 전환을 권고함.
  - 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은 성과지표가 ‘...설치개소수’ 1개인데 전체 사업을 대표할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율’, ‘...만족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원료수급 및 사료가격안정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료가격안정이라는 측면에만 강조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설치목적 100% 달성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사업은 존치하되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 성과지표 역시 원료수급의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축산발전기금으로 수행하는 18개 사업 중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업은 민간 부문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축산자조금사업, 축산물수급관리사업,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사업, 가축개량지원사업,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도축검사원운영사업,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으로 적합함.
- 축산물등급판정지원사업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되, 축산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기금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중국적으로는 일몰제를 채택하여야 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8개 사업 모두(축산자조금,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가축개량지원, 말산업육성지원,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축산물등급판정지원, 축평원·방역본부 세종시 이전청사, 사료산업종합지원, 한우직거래 활성화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지원, 축산물이력제, 축산물 HACCP 컨설팅, 도축검사원운영, 가축위생방역지원) 타 기금 및 예산과 중복되는 사업이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구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적정함.
  - 본 기금의 주요 재원은 마사회납입금 및 민간출연금, 용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수입 비중은 적정함.
-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은 적정함.
  - 정부 내부수입 비중은 낮은 바 적정함.
-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은 기금의 지출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이 과다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권고는 하지 않으나, 용자사업에 대하여 이차보전 등 간접지원의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함.
  - FTA 특별지원대책으로 일환으로 특별회계전입금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있어 이를 자체수입으로 재분류 할 경우 기금의 가용자산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평가됨.
  - 용자사업의 경우 규모가 증가될 경우, 장단기 대여금으로 인하여 기금의 자산 규모는 커지지만 대여금의 만기도래까지 기금이 사용하기 어려운 자금으로 묶이게 되므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차보전 등의 간접 지원 형태로의 사업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기금은 특별회계 전입금이 향후 상당한 금액으로 이관이 예상되는 바 용자사업의 자금의 소요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간접지원형태로의 전환 시점과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한 재원임.
  - 1977년 축산발전기금이 운용된 이래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유통으로 시장차별화와 소비기반 확충,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수급안정을 통한 경영안정,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 축산업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외연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여건은 지속적으로 변화(전업농 비중의 증가, 축산농가의 고령화, FTA 대외시장 개방으로 축산경영 여건 악화, 악성전염병 발생, 친환경 축산업에 대한 수요증가 등)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관련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축산발전기금은 2015년 기준 1조 1,284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고 내역을 보면 마사회납입금, 예치금이자수입, 융자금이자수입, 융자원금회수, 법정부담금, 정부출연금, 여유자금회수 등임.
  - 축산발전기금은 우리나라 축산부문 예산 중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시장개방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축산부문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축산발전기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축산발전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기금으로써 타 기금과 중복성·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음.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보건복지부





# 7. 응급의료기금

##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제 20조		
설 치 년 도	1995년	운용개시년도	1995년
주 무 부 처	보건복지부	기금관리주체	보건복지부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 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본 기금은 도로교통법 과징금 등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전입금 형식으로 유입되고 있음. 일반회계전입금을 자체수입으로 분류하고 일시적인 현상을 배제하게 되면,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적정하고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됨.
중기가용자산 적정	도로교통법 과징금 등 일반회계전입금을 자체수입으로 분류할 경우,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기금사업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됨.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상의 안정적 자원 배분이 확보되는 단계까지 기금형태로 존치하는 것의 타당성이 인정됨.

### 3. 존치평가 총평

- 응급의료는 국가 응급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20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본 기금의 사업은 크게 응급의료 환자에 대한 지원과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타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응급환자의 발생이 불확실성을 띄는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응급의료 사업을 기금으로써 수행하는 것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 본 기금의 다수의 사업들은 민간에 의해 수행되기 어려운 사업임은 인정되나, 본 기금의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119 구급 및 구조와 관련된 사업은 국가의 통상적 의무임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도로교통법 과징금 등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과징금 등이 일반회계 전입금 형식으로 유입되지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명시적으로 조달되는 만큼 실질적인 자체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본 기금을 통하여 긴급자금 4천억 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융자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은 재원조성방법 평가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반회계전입금을 자체수입으로 분류하고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판단할 때, 재원조성방법이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기금의 주요 재원은 도로교통법 과징금 및 과태료이며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이므로, 응급환자 중 교통사고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기금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응급의료사업의 공익성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응급의료안전망 및 생활화지원,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응급의료기관지원,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지원, 119 구급운영지원, 응급의료정보체계구축, 신종감염병 대응체계구축 등 다수 사업의 설치 목적은 유효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응급의료기관지원,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지원, 응급의료정보체계구축 등 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사업, 119구급대지원사업,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등은 중장기적으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권고함.
  - 공익성이 큰 응급의료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으로 수행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의 발생 빈도가 예측가능하지 않고 발생 시의 필요 재원 투입규모도 일정하지 않다는 것임.
  - 이는 반대로 응급의료 상황 발생의 빈도가 높거나 그 확률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의하는 것임.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경우 응급의료상황 발생 빈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고 대상자의 규모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119구급운영지원 사업(119구급대지원, 119구조장비확충 등)은 국가의 통상적 기능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또한 해당 사업이 응급의료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는 바, 일반회계로 이관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응급의료안전망 및 생활화지원 사업,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사업, 119구급운영지원사업, 응급의료정보 체계 구축사업 등은 예산 및 타기금사업과 중복되는 바가 없음.

## ㉒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안정적인 수입원(도로교통법 과징금 및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과징금)으로부터 전체 재원의 약 80%를 조달하고 있음.
  - 상기 자금은 일반회계전입금 형식으로 유입되지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명시적으로 조달되는 만큼 실질적인 자체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본 기금을 통하여 긴급자금 4천억 원을 공자기금예수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용자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체수입 비중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일반회계전입금을 자체수입으로 분류하고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판단할 때, 자체수입 비중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도로교통법 과징금 등을 정부내부수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분류하면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 기금의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등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본 기금의 주요 재원은 도로교통법 과징금 및 과태료이며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임. 응급환자 중 교통사고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기금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도로교통법 과징금 등 일반회계전입금을 자체수입으로 분류할 경우,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본 기금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따른 긴급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4천억 원을 장기차입금(부채)와 장기대여금(자산)으로 동시에 계상하고 있음.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응급의료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므로 공익성이 매우 높음.
  - 응급의료이 필요한 사건의 발생 빈도와 분포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응급의료서비스에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응급의료 수요자가 지불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응급의료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임.
- 하지만 응급의료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 수요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사업 수요의 규모와 발생빈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임.
  - 그러나 현재 본 기금이 수행하는 모든 세부사업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본 기금을 존치시켜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됨.

- 응급의료체계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며 본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였을 경우 그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당분간은 본 기금을 존치하되 장기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가 충분히 발전되었거나 그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시점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본 기금의 모든 사업을 한 번에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개별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환 경 부



## 8. 금강수계관리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설치년도	2002년	운용개시년도	2002년
주무부처	환경부	기금관리주체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안정적인 수입원(물이용부담금)을 확보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하고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조성이 안정적임
중기가용자산 적정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자산의 대부분은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으로 관련 법률상 매도할 수 없는 사업필수자산임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기금목적의 유효성, 타 기금과의 차별성에 근거할 때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3. 존치평가 총평

-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1.14.)시행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으로 금강·만경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대전, 충남·북, 전북지역의 450만 주민이 식수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 본 기금을 활용한 2015년 주요사업은 지출 비중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50.5%), 주민지원사업(20.4%),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관리(19.5%)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주요사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금강 상수원의 현행 수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물이용부담금)을 안정적인 수입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강수계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물제공을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목적사업 연계성이 높으며 부담자 및 부담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금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존치가 불가피하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금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금강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통하여 식수원인 금강의 수질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설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본 기금을 활용한 2015년 주요사업은 지출 비중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50.5%), 주민지원사업(20.4%),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관리(19.5%)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주요사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금강 상수원의 현행 수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기금지원에 의한 환경기초시설로 인하여 오염물질 삭감량이 2014년 3.26톤/년에서 2015년 3.62톤/년으로 증가하여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109.7% 초과 달성된 것으로 보고됨.
  -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관리 사업(18.3%)의 경우 단위면적당 오염 저감량과 녹지조성실적에 관한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를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17.1%)의 경우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를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본 기금은 금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준치가 불가피하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금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금강 수질개선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을 국고보조에 의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 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본 기금의 사업주체는 환경부 또는 금강 수계 관리위원회와 같은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은 일반회계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사업과 중복되지만, 본 기금은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지원을 전제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일정 비율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이 없으며 예산과 기금 간의 분담도 비교적 명확함.
- 국고로 추진되던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은 종전과 같이 계속 추진되며, 본 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환경투자 비용 충당, 수질개선사업 추진 지원 및 규제강화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음.
-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지원 비율은 상·하류 지역의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지만, 중앙정부, 지자체, 기금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질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중과 선택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본 기금은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조성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수계 기금과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중복 유사성이 전혀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160원/톤)을 자체수입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조성은 안정적임.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를 기초로 판단할 때 향후 사업비 지출액은 물이용 부담금의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0%로서 적정함.
  - 본 기금은 자체수입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음.
- 본 기금의 수익자 원인자 손피자 등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본 기금은 금강수계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물제공을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원의 목적사업 연계성이 높으며, 부담자 및 부담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은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으로 관련 법률상 매도할 수 없는 사업필수자산에 해당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금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금목적에 타당함.
- 본 기금은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금목적에 타당하고,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에 부합된 물 수요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4대강별 수계관리기금은 사업의 종류 및 운용형태는 비슷하나, 수계별 재원부담 기준이 다르고, 추진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이 수계별로 상이하여 개별 기금으로 운영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4대강 별 수계관리기금은 사업의 종류 및 운용형태는 비슷하나, 수계별 재원 부담 기준이 다르고, 추진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이 수계별로 상이하여 개별 기금으로 간주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설치년도	2002년	운용개시년도	2002년
주무부처	환경부	기금관리주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안정적인 수입원(물이용부담금)을 확보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하고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조성이 안정적임.
중기가용자산 과다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과다 규모가 개선조치를 필요로 할 만큼 크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는 권고하지 않음.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으로 관련 법률상 매도할 수 없는 사업필수자산임.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기금목적의 유효성, 타 기금과의 차별성에 근거할 때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3. 존치평가 총평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2002.1.14.) 시행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낙동강 주변 시민의 식수원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 본 기금을 활용한 2015년 주요사업은 지출 비중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60.43%),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관리 (16%), 주민지원사업 (12.2%)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주요사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낙동강 상수원의 현행 수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본 기금은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조성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수계 기금과 지리적 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중복 유사성이 전혀 없다. 특히 '06년부터 낙동강 최 하류인 물금지역 상수원 원수의 BOD가 월평균 3mg/L 초과 시 물이용부담금을 수질과 연동하여 부과(낙동강수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부산시 적용)하는 등 타 기금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물이용부담금)을 안정적인 수입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과다 규모가 개선조치를 필요로 할 만큼 크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는 권고하지 않는다. 낙동강수계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물제공을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목적사업 연계성이 높으며 부담자 및 부담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존치가 불가피하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금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통하여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설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본 기금을 활용한 2015년 주요사업은 지출 비중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60.43%),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관리(16%), 주민지원 사업(12.2%)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주요사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낙동강 상수원의 현행 수질을 유지하는데 기여 하고 있음.
- 낙동강수계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상류에 입지하고 있는 오염원이 많아 환경 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비율은 타 수계기금에 비하여 적으나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음.
  - 기금지원에 의한 환경기초시설로 인하여 오염물질 삭감량이 2014년 196.2톤/년 에서 2015년 191.9톤/년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지만 목표치 대비 실적치는 100.5% 초과 달성된 것으로 보고됨.
  - '14년의 경우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강우일수 및 강수량이 예년 보다 다소 증가하여 오염물질을 함유한 초기 우수가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되어 오염물질의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삭감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
-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관리 사업의 경우 단위면적당 오염 저감량의 2014년 목표치 37을 2015년에는 62로 대폭 상승시켰는데도 2014년 단위면적당 오염 저감량 실적치 46.22에서 2015년 실적치 65.01로 증가시키며 달성률 104.9%를 실현하였고 녹지조성실적도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를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12.2%)의 경우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를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본 기금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존치가 불가피하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금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낙동강 수질개선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을 국고보조에 의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본 기금의 사업주체는 환경부 또는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와 같은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은 일반회계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사업과 중복되지만, 본 기금은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지원을 전제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일정 비율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이 없으며 예산과 기금 간의 분담도 비교적 명확함.
- 국고로 추진되던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은 종전과 같이 계속 추진되며, 본 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환경투자 비용 충당, 수질개선사업 추진 지원 및 규제강화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사업과 중복 유사성이 없음.
-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지원 비율은 상·하류 지역의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지만, 중앙정부, 지자체, 기금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질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중과 선택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본 기금은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조성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수계 기금과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중복 유사성이 전혀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170원/톤)을 자체수입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조성은 안정적임.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를 기초로 판단할 때 향후 사업비 지출액은 물이용부담금의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0%로서 적정함.
  - 본 기금은 자체수입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음.
- 본 기금의 수익자 원인자 손피자 등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본 기금은 낙동강수계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물제공을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원의 목적사업 연계성이 높으며, 부담자 및 부담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되나, 과다 규모가 개선조치를 필요로 할 만큼 크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는 권고하지 않음.
  -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은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으로 관련 법률상 매도할 수 없는 사업필수자산에 해당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금목적에 타당함.
- 본 기금은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금목적에 타당하고,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에 부합된 물 수요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4대강별 수계관리기금은 사업의 종류 및 운용형태는 비슷하나, 수계별 재원부담 기준이 다르고, 추진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이 수계별로 상이하여 개별 기금으로 운영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4대강 별 수계관리기금은 사업의 종류 및 운용형태는 비슷하나, 수계별 재원 부담 기준이 다르고, 추진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이 수계별로 상이하여 개별 기금으로 간주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1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설치년도	2002년	운용개시년도	2002년
주무부처	환경부	기금관리주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안정적인 수입원(물이용부담금)을 확보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하고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조성이 안정적임.
중기가용자산 과다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과다 규모가 개선조치를 필요로 할 만큼 크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는 권고하지 않음.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으로 관련 법률상 매도할 수 없는 사업필수자산임.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기금목적의 유효성, 타 기금과의 차별성에 근거할 때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3. 존치평가 총평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2002.1.14.)시행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요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 본 기금을 활용한 2015년 주요사업은 지출 비중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50.3%), 주민지원사업(20.8%),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9.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주요사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영산강·섬진강 상수원의 현행 수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물이용부담금)을 안정적인 수입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다 규모가 개선조치를 필요로 할 만큼 크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는 권고하지 않는다. 본 기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물제공을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목적사업 연계성이 높으며 부담자 및 부담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존치가 불가피하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금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상수원 댐이 모두 섬진강수계에 위치하여 동 수계에서 공급하는 물을 영산강수계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함에 따라 수계를 달리하는 지역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물 분쟁을 해결하고자 설치하였으며, 동 기금으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불편에 따르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촉진함으로써, 수계를 달리하는 지역주민간의 갈등 조정과 맑은 물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실현하는데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설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본 기금의 지출 비중 측면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은 토지매수 사업(40%)으로 주암호 등 5개 상수원댐 토지매수가능지역(상수원관리지역 등)의 토지를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하여 상수원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토지매수사업의 성과지표인 단위면적당 오염물질저감량 목표치를 달성함.
- 기금지원에 의한 환경기초시설(26.7%)로 인하여 오염물질 삭감량은 2014년 0.264톤/년에서 2015년 0.266톤/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목표치 대비 실적치는 100.3% 초과 달성된 것으로 보고됨.
- 주민지원사업(17.1%)의 경우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를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본 기금은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존치가 불가피하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금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을 국고보조에 의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본 기금의 사업주체는 환경부 또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위원회와 같은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은 일반회계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사업과 중복되지만, 본 기금은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지원을 전제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일정 비율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이 없으며 예산과 기금 간의 분담도 비교적 명확함.
- 국고로 추진되던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은 종전과 같이 계속 추진되며, 본 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환경투자 비용 충당, 수질개선사업 추진 지원 및 규제강화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음.
-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지원 비율은 상·하류 지역의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지만, 중앙정부, 지자체, 기금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질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중과 선택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본 기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조성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수계 기금과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중복 유사성이 전혀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170원/톤)을 자체수입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조성은 안정적임.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를 기초로 판단할 때 향후 사업비 지출액은 물이용 부담금의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0%로서 적정함.
  - 본 기금은 자체수입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음.
- 본 기금의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등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본 기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물제공을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원의 목적사업 연계성이 높으며, 부담자 및 부담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되나, 과다 규모가 개선조치를 필요로 할 만큼 크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는 권고하지 않음.
  -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은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으로 관련 법률상 매도할 수 없는 사업필수자산에 해당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금목적에 타당함.
- 본 기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금목적에 타당하고,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에 부합된 물 수요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4대강별 수계관리기금은 사업의 종류 및 운용형태는 비슷하나, 수계별 재원부담 기준이 다르고, 추진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이 수계별로 상이하여 개별 기금으로 운영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4대강 별 수계관리기금은 사업의 종류 및 운용형태는 비슷하나, 수계별 재원 부담 기준이 다르고, 추진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이 수계별로 상이하여 개별 기금으로 간주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11. 한강수계관리기금

##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설 치 년 도	1999년	운용개시년도	1999년
주 무 부 처	환경부	기금관리주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 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안정적인 수입원(물이용부담금)을 확보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하고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조성이 안정적임.
중기가용자산 과다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기금목적의 유효성, 타 기금과의 차별성에 근거할 때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3. 존치평가 총평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1998.11.20)시행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9.2.8)제정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 본 기금을 활용한 2015년 주요사업은 지출 비중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47.3%),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관리(21.3%), 주민지원사업(15.4%)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주요사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한강 상수원의 현행 수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물이용부담금)을 안정적인 수입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나, 중기가용자산은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82%는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으로 관련 법률상 매도할 수 없는 사업필수자산이며, 중기가용자산 과다규모에 해당하는 잉여자금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형태로 연기금 투자폴 또는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본 기금의 과거 5개년 자체수입 누적액이 필수사업비 지출누적액보다 크며 중기수지추계도 유사한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자금은 단기간 내에 사업비용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본 기금은 한강수계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물제공을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목적사업 연계성이 높으며 부담자 및 부담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한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존치가 불가피하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금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동 기금으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불편에 따르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촉진함으로써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설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기금지원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사업(47.3%)으로 인하여 오염물질 삭감량이 2014년 78.5톤/년에서 2015년 82.3톤/년으로 증가하여 목표치 대비 실적치는 115.9% 초과 달성된 것으로 보고됨.
- 본 기금의 토지매수 사업(21.3%)으로 인한 오염저감량의 2015년 목표치는 220인데 실적치 59.8로 목표달성률이 27.2%에 불과함.
  -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13.12.27) 이후 우선매수지역의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의 매수가 제한되어, 오염저감량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매수비율(면적기준)이 감소('12년 3.4%→'13년 2.6%→'14년 1.34%→'15년 1.28%) 추세이며, 특히 오염저감 기여율이 큰 '매수 건축물 중 음식점 면적비율'이 96% 감소('13년 16.8%→'15년 0.7%) 되어 오염저감량도 84% 감소함. ('13년 44%→'15년 7%)
- 주민지원사업(15.4%)의 경우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를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기금지원에 의한 기타 수질개선지원사업(12.6%)으로 친환경청정산업의 지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시행하여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를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2015년 8월 한강법 개정에 따라 「청정산업의 지원」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으로 기타수질개선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분리함.
- 본 기금은 한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존치가 불가피하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금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한강 수질개선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을 국고보조에 의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본 기금의 사업주체는 환경부 또는 한강 수계 관리위원회와 같은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은 일반회계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사업과 중복되지만, 본 기금은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지원을 전제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일정 비율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이 없으며 예산과 기금 간의 분담도 비교적 명확함.
- 국고로 추진되던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은 종전과 같이 계속 추진되며, 본 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환경투자 비용 충당, 수질개선사업 추진 지원 및 규제강화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사업과 중복 유사성이 없음.
-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지원 비율은 상·하류 지역의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지만, 중앙정부, 지자체, 기금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질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중과 선택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본 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조성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수계 기금과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중복 유사성이 전혀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170원/톤)을 자체수입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조성은 안정적임.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를 기초로 판단할 때 향후 사업비 지출액은 물이용 부담금의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0%로서 적정함.
  - 본 기금은 자체수입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음.
- 본 기금의 수익자 원인자 손피자 등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본 기금은 한강수계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물제공을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원의 목적사업 연계성이 높으며, 부담자 및 부담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82%는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으로 관련 법률상 매도할 수 없는 사업필수자산이며, 중기가용자산 과다규모에 해당하는 잉여자금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형태로 연기금 투자폴 또는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본 기금의 과거 5개년 자체수입 누적액이 필수사업비 지출누적액보다 크며 중기수지추계도 유사한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자금은 단기간 내에 사업비용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한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금목적에 타당함.
- 본 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금목적에 타당하고,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에 부합된 물 수요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4대강별 수계관리기금은 사업의 종류 및 운용형태는 비슷하나, 수계별 재원부담 기준이 다르고, 추진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이 수계별로 상이하여 개별 기금으로 운영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4대강 별 수계관리기금은 사업의 종류 및 운용형태는 비슷하나, 수계별 재원 부담 기준이 다르고, 추진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이 수계별로 상이하여 개별 기금으로 간주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고 용 노 동 부





## 12. 근로복지진흥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설치년도	1993년	운용개시년도	1994년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금관리주체	근로복지공단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직장여성 아파트 관리운영	폐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감소했고, 행복주택 사업과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됨.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안정적인 수입원(복권기금전입금 등)을 확보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하고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이 낮아 기금의 재원조성이 안정적임.
중기가용자산 과다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본 기금의 과거 5개년 자금수지 실적을 볼 때 잉여자금이 누적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중기수지추계도 유사한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자금은 단기간 내에 사업비용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잉여자금의 공자기금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권고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p>최근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변화 속에서 근로복지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금의 존치가 타당함. 다만, 변화하는 근로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하도록 권고함.</p>

### 3. 존치평가 총평

-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를 근거로 1993년 설치되었고, 1994년부터 기금의 운용을 시작하였다. 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계정에서 생활안정자금 용자·직장여성 아파트 관리운영·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퇴직연금·선진기업복지도입 지원·근로자문화예술제 사업을, 신용보증사업계정에서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수행중이며, 실업대책사업계정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수행중인 사업이 없다.
  
- 본 기금이 현재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용자·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퇴직연금·선진기업복지도입 지원·신용보증지원 사업은 설치목적·사업주체의 적합성·사업의 중복 및 유사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문화예술제 사업은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근로자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권고한다. 직장여성 아파트 관리운영 사업은 설치목적은 달성하는 효과가 줄어들었고, 행복주택 사업과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므로 폐지를 권고한다.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복권기금전입금 등)을 안정적인 수입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자기금예탁을 권고한다. 본 기금의 과거 5개년 자체수입 누적액이 필수사업비 지출누적액을 크게 상회하여 잉여자금이 누적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중기수지추계도 유사한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자금은 단기간 내에 사업비용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다보유 자산에 대해 공자기금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권고한다. 복권수입금의 법정비율로 전입되는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변화 속에서 다양한 근로복지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유효하다.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 기금은 존치가 타당하다. 본 기금은 근로복지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선진기업복지제도도입 지원 사업, 퇴직연금 사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신용보증지원 사업의 설치목적은 유효함.
- 근로자문화예술제사업은 보다 많은 근로자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권고함.
  - 근로자문화예술제는 연 1회 약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일회성 행사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9항에 규정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제한적임.
  -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회성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각 사업장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효율적임.
- 직장여성 아파트 관리운영사업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감소했으므로 폐지를 권고함.
  -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근로자 중 혼자 거주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직접 아파트를 건립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근로자의 복지 진흥에 기여하는 효과가 감소했음.
  - 2013년 기금준치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본 사업의 종료를 추진해왔음.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직장여성 아파트 관리운영사업, 선진기업복지제도도입 지원사업, 퇴직연금사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신용보증지원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근로자문화예술제사업은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권고함.
- 본 사업은 매년 약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근로자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민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2005년 이래 행사 전 분야를 KBS미디어에 일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37회 근로자문화예술제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후원하였고, IBK기업은행이 협찬하는 등 이미 행사 개최 과정에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근로자문화예술제사업, 선진기업복지제도도입 지원사업, 퇴직연금사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신용보증지원사업은 예산·타기금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음.
- 직장여성 아파트 관리운영 사업은 행복주택 사업과 중복되므로 폐지를 권고함.
  - 행복주택 사업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14만호가 공급될 계획임.
  - 행복주택 사업의 대상은 직장생활 5년 이내 미혼자, 결혼 5년 이내 직장인,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산업단지 소속 기업의 근로자, 대학생 등을 포함하므로 직장여성 아파트 관리운영 사업의 대상을 포괄함.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은 복권기금전입금(법정배분비율 전입금), 재산수입, 융자원금 회수액 등을 자체수입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조성은 안정적임.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2%로서 적정함.
- 본 기금의 수익자 원인자 손피자 등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본 기금은 복권수입금의 법정비율로 전입되는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공자기금 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권고함.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본 기금의 과거 5개년 자체수입 누적액이 필수사업비지출 누적액을 크게 상회하여 잉여자금이 누적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중기수지추계도 유사한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자금은 단기간 내에 사업비용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다보유 자산의 공자기금 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권고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최근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변화 속에서 근로복지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므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유효함.
  -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약 87%가 중소기업 종사자이고,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약 32%인 등, 현재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로복지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복지기금의 존치가 타당함.

-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감안하여 사업체계를 재편하는 등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이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청년 비정규직 취업규모 증가, 중장년층 이직 및 재취업 증가, 여성 취업자 증가 등에 따라 근로복지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
- 경제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기금 설치목적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체계를 재편하는 등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기금의 잉여자금은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근로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권고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타 기금과 설치목적 등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은 발견되지 않음.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1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설치년도	1991년	운용개시년도	1991년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금관리주체	고용노동부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구성방법 적정	안정적인 수입원(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확보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하고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이 낮아 기금의 재원조성이 안정적임.
중기가용자산 과다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본 기금의 과거 5개년 자금수지실적을 볼 때 잉여자금이 누적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중기수지추계도 유사한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자금은 단기간 내에 사업비용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일반회계전입금의 출연 없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전입금 출연 중단 및 잉여자금의 공자기금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권고함.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기금의 존치가 타당함. 다만, 장애인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근거해 중장기 운용계획을 개선토록 권고함.

### 3. 존치평가 총평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에 근거하여 1990년에 설치되었다. 1991년부터 기금의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 장애인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 고용연구,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중이다.
  
- 본 기금의 사업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 사업,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사업, 장애인 고용연구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사업은 설치목적·사업주체의 적합성·사업의 중복 및 유사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의 설치목적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내용의 개선을 권고한다.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사업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과 일부 중복되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업 추진체계의 정비와 재편을 권고한다.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안정적인 수입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전입금 출연 중단 및 공자기금예탁을 권고한다. 본 기금의 과거 5개년 자체수입 누적액이 필수사업비 지출누적액을 크게 상회하여 잉여자금이 누적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중기수지추계도 유사한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자금은 단기간 내에 사업비용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일반회계전입금의 출연 없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전입금 출연 중단 및 잉여자금의 공자기금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본 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본 기금의 목적이 장애인 고용촉진임을 감안할 때,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은 높으며, 부담자 및 부담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인 현실 속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므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유효하다.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 기금은 존치가 타당하다.
  
- 본 기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별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운용계획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 사업,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사업,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사업, 장애인 고용연구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의 설치목적은 유효함.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에는 2015년 기준 본 기금의 전체 사업 지원실적 2,136억원 중 약 70%인 1,482억원이 집행되었으나, 투입 재원 대비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와 타 사업과 비교한 상대적인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의 규모에 대한 분석 없이 자원이 편중되어 배분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장려금을 수급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고용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주에게 불필요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사업 설치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저해함.
  - 본 사업은 장려금 수급 없이는 장애인 고용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여부를 보조금에 영속적으로 의존토록 하는 문제를 갖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 설치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저해함.
  - 기금의 설치목적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고용창출 및 유지효과에 대해 엄밀히 실증분석하고, 고용창출 및 유지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 금액 및 기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 사업,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사업,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사업, 장애인 고용연구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 사업,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사업, 장애인 고용연구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사업은 예산·타기금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음.
-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함.
  -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수행중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과 중복됨.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의 취업지원 사업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업 추진 체계의 정비와 재편이 필요함.

## 2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구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자체수입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조성은 안정적임.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를 기초로 판단할 때 향후 사업비 지출액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3%로서 적정함.
  - 본 기금은 자체수입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전입금 출연을 받고 있음.
- 본 기금의 수익자 원인자 손피자 등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본 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본 기금의 목적이 장애인 고용촉진임을 감안할 때,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은 높으며, 부담자 및 부담기준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 중단 및 공자기금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권고함.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본 기금의 과거 5개년 자체수입 누적액이 필수사업비 지출누적액을 크게 상회하여 잉여자금이 누적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중기수지추계도 유사한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자금은 단기간 내에 사업비용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일반회계전입금의 출연 없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전입금 출연 중단 및 잉여자금의 공자기금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권고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효함.
- 2015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7%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63.3%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 실업률은 7.9%로 전체 실업률 3.8%의 두 배 이상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간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존치가 타당함.

- 장애인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 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본 기금은 사업주의 비용을 분담하는 사업, 장애인의 근로역량을 확충하는 사업, 고용알선 서비스 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보조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약 70% 가량이 편중되어 있음.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금에서 사업에 집행하지 않은 잉여자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가용자금의 사업별 배분은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과 고려 없이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요 진작, 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 장애인 고용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등 관련 사업들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용자금의 사업별 배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민간의 장애인 고용 비용을 정부에 일부 전가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기금의 중장기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타 기금과 설치목적 등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은 발견되지 않음.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여 성 가 족 부



# 14. 양성평등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설치년도	1995년	운용개시년도	1996년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기금관리주체	여성가족부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미흡	재원조성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재원을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자체 수입의 확보가 필요함.
중기가용자산 과소	중기가용자산은 과소하므로 기금 사업 규모의 축소 및 새로운 재원발굴이 필요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조건부존치	현재의 양성평등기금의 재원구조를 보면 100% 복권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예산사업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인 양성평등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배분용도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양성평등기금을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세입구조의 다변화 노력을 통해 재원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 3. 존치평가 총평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의거하여 1995년에 설치되어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재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할 때 국가의 출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0%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의 용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 본 기금은 2016년 현재 1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적정성이 인정되나 일부 사업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결혼여성이민인턴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용지원사업(고용센터 등)과 일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단기적으로는 별개로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여성가족부 사업으로의 통합추진을 권고한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중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의 사업과 유사·중복적인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사·중복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작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그 외 사업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기금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본 기금은 민간 출연금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바 대부분의 재원을 복권기금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자체수입의 기금의 목적과의 연계성도 낮은 실정이다. 아울러 중기가용자산도 과소하기 때문에 기금의 사업규모의 축소 및 중장기적으로 대체재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 본 기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재원으로서 설치 이후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다만, 여성고용률 등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과 유사·중복된 기금은 없으나 사업별로 유사·중복된 사업은 존재한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이 복권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복권기금의 재원배분용도와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 간 불일치 현상도 존재하는 등 해소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 본 기금이 우리나라 양성평등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향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양성평등기금이 존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양성평등기금의 재원구조를 보면 100% 복권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예산사업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인 양성평등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배분용도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복권기금에서만 충당하는 방식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재원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즉, 세입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복권기금에서만 충당하는 방식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둘째, 사업의 통폐합 및 이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하여 현행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다수의 사업에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는 지표들은 투입 또는 산출지표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중심의 지표로 전환을 권고한다. 넷째, 결과지표의 일종으로 ‘...만족도’를 제시한 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 중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사업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여성가족부가 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성과지표 중 취업률 지표는 현행 유지하면서 취업지속비율지표를 병행 사용하여야 함.
  - 현재 취업의 수준은 단순노무 등에 치중해 있는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취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함.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중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함.
  - 다만, 성과지표 중 ‘…수혜자수’는 투입 또는 산출지표이기 때문에 좀 더 수준 있는 지표로의 전환을 권고하며, ‘…만족도’로 되어 있는 지표는 1개 이상의 지표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 만족도조사는 자체조사 방식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줌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은 결혼이주가정의 건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나 타 부처와의 사업조정 및 지역센터의 사업조정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중 …참여자수, …제도 개선실적은 투입 또는 산출지표이기 때문에 좀 더 수준있는 지표로의 전환을 권고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일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의 프로그램과 일부의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는바, 여성가족부 주관의 조정을 권고함.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지역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의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사업의 확대 등을 권고하며, 반복이용자수의 증가도 중요하지만(연인원기준으로 이용자수를 산정할 경우의 기준) 실제 이용자수(실인원기준으로 이용자수를 산정할 경우의 기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은 성과지표 중 ‘…지원실적’은 투입지표이기 때문에 좀 더 수준 있는 지표로의 전환을 권고함.
-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통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인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나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사업과의 통합추진이 타당함.
- 성과지표에서 성매매 피해상담건수는 투입 또는 산출지표로서 사업목적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사업상 연계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사업 통합 등을 권고함(2016년 기추진).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예 초점이 있는 사업인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됨.
- 다만, 현재 제시되어 있는 성과지표의 일부는 여성가족부의 지표가 아니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노력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지표로의 수정을 권고함.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됨.



- 다만,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의 성과지표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 수혜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서 피해자지원실적은 투입 또는 산출지표로서 사업목적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표로 전환 조치할 것을 권고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양성평등기금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대다수의 사업이 중앙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며 집행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주체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은 존재함.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운영사업,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등은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타당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결혼여성이민인턴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용지원사업(고용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중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통합 추진할 것을 권고함.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세부사업(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의 사업과 유사·중복적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통합할 것을 권고함.
-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예산의 낭비적·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미흡함.
  - 본 기금의 자체수입은 민간출연금으로 3% 수준인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도 미흡함.
  - 정부 내부수입으로서 복권기금 전입금이 93%를 차지하고 있는바 미흡함.
-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은 낮음.
  - 민간출연금은 금액이 미미하고 복권기금 전입금이 대부분인바 이는 공익 지원 사업비로 해당 사업에만 사용하고 잔액은 전액 반납되어 양성평등기금 재원 조성과의 관련이 없음.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정부 중기가용자산이 과소함.
  - 본 기금은 수입의 대부분을 복권기금 전입금에 의존하는 바 여유자금 재원이 부족한바 중장기적으로 신규 재원 확보와 함께 사업 규모의 축소가 필요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이 우리나라 양성평등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향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양성평등기금이 현재처럼 복권기금에만 의존할 경우 양성평등사업이라는 기금설치목적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배분용도 간 불일치로 인해 문제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배분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에 있기 때문에 양자 간 불일치현상이 존재함.
- 따라서 세입구조의 다변화 노력과 함께 재원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 현재와 같이 복권기금에서만 충당하는 방식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할 수 없음.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양성평등기금과 유사·중복된 기금은 없음.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15. 청소년육성기금

##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53조		
설 치 년 도	1987년	운용개시년도	1989년도
주 무 부 처	여성가족부	기금관리주체	여성가족부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 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미흡	자체수입비중은 낮고 기금의 목적사업과의 연계성도 낮은 바 신규재원 발굴이 필요함.
중기가용자산 과소	향후에 안정적으로 기금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중기가용 자산이 매우 부족하므로 신규 재원 발굴 및 사업의 축소가 필요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조건부존치	<p>재원의 구조를 보면 세입이 경륜사업수익과 복권기금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복권기금으로 되어 있음.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목적과 복권기금의 목적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금의 존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청소년육성기금이 존치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조조정, 재원의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p>

### 3. 존치평가 총평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고 재원을 보면 수입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에 따른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지출용도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청소년 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 본 기금은 2016년 95,737백만원을 가지고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바 모든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업으로서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나 몇 가지의 기준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고 일부 사업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청소년참여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사업,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사업은 적정하다.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해소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추진 하였던 사업이었으나 사업영역조정을 통하여 유사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청소년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중독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의 사업통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본 기금은 수입재원이 경륜·경정 수익금이나 감소하고 있어 복권기금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자체수입의 기금의 목적과의 연계성도 낮은 실정이다. 아울러 중기가용자산도 과소하기 때문에 기금의 사업 규모의 축소 및 중장기적으로 대체재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 본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이 설치된 이후 청소년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위기청소년사전예방, 유형별 맞춤형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맞춤형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기여 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핵가족화, 이혼 및 재혼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의 청소년 보호기능이 약화되었으므로 현재까지도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과 유사중복된 기금은 없으나 개별

사업별로는 유사·중복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구조를 보면 대다수가 복권기금으로 전입되므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배분이유와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용도 간 불일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한다.

- 본 기금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존치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세입구조의 다변화노력이 있거나 경륜사업수익규모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통폐합 및 이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하여 현행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대다수의 사업에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는 지표들은 투입 또는 산출지표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중심 지표로의 전환을 권고한다. 넷째, 결과지표의 일종으로 ‘…만족도’를 제시한 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청소년참여지원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기회와 경험의 장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있는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됨.
  - 다만, 성과평가지표 중 정량적인 부분은 투입 또는 산출지표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정성지표는 부분을 대표할 뿐 전체 사업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을 권고함.
-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이며 취약계층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 및 사업이 명확하나 주로 학습프로그램에 치중해 있는바 역량개발과 관련한 사업 프로그램으로는 다소 부족한 점(돌봄서비스적 성격이 강함)들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성과평가지표 중 ‘...참여청소년수’ 보다는 ‘참여자수 지속율’ 등이 더 바람직한 지표인바 수정 및 보완을 권고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써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임.
  - 성과평가지표는 전체 사업 중 일부에 해당되는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을 권고함.
-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 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됨.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사업,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은 추진계획 및 사업이 명확하고 중장기운영계획과 설치목적이 일관적인바 사업목적의 달성이 기대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의 경우 공공재적 사업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대다수의 사업이 중앙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며 집행과정에서 민간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주체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은 존재함.
- 청소년참여지원사업,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사업은 여성가족부 내 사업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써 반드시 기금사업일 필요는 없으며 가능하다면 일반회계사업으로의 전환도 모색할 수 있음.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청소년육성기금은 타 기금과 중복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9개 사업 중 일부는 중복 또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 해소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유사성을 가지고 추진하였던 사업이었으나 사업영역조정을 통하여 유사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존치함.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중독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의 사업통합 등을 고려하여야 함.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구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주요 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13%로 미흡함.
  - 본 기금은 자체 수입재원이 경륜·경정 수익금이나 2011년 이후 출연금 비율이 축소(30% → 19.5%)되었으며 자체수입 비중은 현저히 낮음.
-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은 미흡함.
  - 정부 내부수입은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어 복권기금에 대한 전입금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경륜·경정 수익금과 기금의 지출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낮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경륜·경정 수익금 등은 본 기금 목적 및 설치 취지와 연계성이 낮으므로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기금 목적과의 연계성이 있는 수입재원의 개발이 필요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이 과소함.
  - 본 기금은 자체 수입재원인 경륜·경정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복권기금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중기가용자산이 부족하며 향후에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설치됨.
  - 1989년 운영된 이후 지금까지 청소년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위기청소년사전예방, 유형별 맞춤형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맞춤형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 이혼 및 재혼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의 청소년 보호기능이 약화된바 현재까지도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 등의 역할이 존재함.
- 청소년육성기금은 2016년 기준 경륜사업수익(9,566백만원)과 복권기금전입금(84,187백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54조에 의하면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에 따른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되어 있음.
  - 용도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임.
- 청소년육성기금의 대다수가 복권기금으로 전입되는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배분이유와 지출용도를 일정부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의하면 ③의 3에 의하면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사업과는 일치성이 크지는 않음.

- 다만, 경륜사업수익으로부터 전입되는 규모가 있는바, 일정부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음.

○ 종합하면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에 기여하였고 향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존치할 필요가 있으나,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구조를 보면 세입이 경륜사업수익과 복권기금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복권기금으로 되어 있음.

-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목적과 복권기금의 목적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금의 존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육성기금이 존치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조조정, 재원의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청소년육성기금과 중복되어 있는 타 기금 없음.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금 용 위 원 회



## 16. 기술신용보증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설치년도	1989년	운용개시년도	1989년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기금관리주체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함.
중기가용자산 적정	중기가용자산은 적정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기술평가와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구상권 관리 사업을 수행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기금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가 타당함.



### 3. 존치평가 총평

- 기술보증기금은 1986년에 제정된 기술보증기금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동법 제1조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평가와 기술보증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사업은 기술보증, 기술평가, 보증연계투자, 구상권 관리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출연금, 금융기관출연금과 자체수입이다.
- 본 기금의 주된 4개 사업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조항에 기금의 업무로써 2. 기술신용보증, 3의2.보증연계투자, 6.기술평가, 7.구상권 행사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설치 목적이 유효하고, 사업주체 또한 직접관리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기술평가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주요사업과 유사성은 가지고 있으나, 그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술보증 사업의 경우 신용보증 사업과 전체 잔액의 6%내외 수준에서 지원대상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거 50%대에 초과했던 중복보증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점과 기업 자체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 중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복성을 지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본 기금의 자체수입은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 구상채권 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조성 방법과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다. 아울러 중기 가용자산의 경우에도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상채권의 회수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연계 방안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게 매각하는 방안 등 회수 극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본 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더욱 중요해지는 향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GDP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보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민간부문과 분담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기술평가, 구상권 관리사업의 설치 목적은 기술보증 기금법 제28조 조항에 근거하여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기술보증 사업은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정부정책 실행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안전판 역할 수행이라는 긍정적인 이면 뒤에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첫째, GDP 대비 공적보증의 총량이 국제권고 기준 대비 높다는 것이고, 둘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신용보증기금 등 타기금과 비교 시, 지원 대상에 있어 여전히 중복이 존재하는 것임.
  - 국가경제규모 대비 적정 기술보증기금의 총량에 대한 기준과 이에 대한 중장기적 실행계획이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며, 타 기금과의 중복보증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고성장에서 저성장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보증으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기업 간 거래의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보험 등 다양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창업초기기업을 중심으로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투자를 통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직접금융 조달기회를 부여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등 민간투자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기업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 다만, 투자를 받은 이후 기업 상장 시까지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상장이 안 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용이치 않아 장기 보증으로 인한 기존 폐해가 보증연계 투자 사업에도 나타날 개연성이 있어 투자 회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도입되어야 할 것임.

- 기술평가 사업은 담보력이 열악한 기업에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기술평가 기법과 함께 기술금융 평가와 비금융 평가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음은 인정됨.
- 특히, 기관이 그동안 축적한 기술평가 노하우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전파·확산하여 보다 많은 기술 중소기업들의 자금 접근성을 제고한 점은 인정됨. 다만, 기술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신용을 획득하려는 중소기업의 니즈 대비 기관의 평가인력 등의 한계로 아쉬운 부문이 있음.
- 구상권 관리 사업은 보증지원 이후 부실화된 채무에 대한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해 기술보증 사업의 재원인 기본 재산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최근에는 실패기업 재기 지원을 통해 실패기업의 기술 및 사업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다만, 재기 지원을 위한 실패기업의 선별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기 지원 확대에 의해 구상권 행사가 위축되거나 회수액의 감소로 인해 재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 사업 주체의 적합성

-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기술평가, 구상권 관리사업의 주체는 기술보증기금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제3장 제12조에 근거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 사업은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용이 요구되고 있어 예산 사업으로 전환 시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으며,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으로 민간으로 사업 주체 변경 시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의 사업 중 기술평가를 제외한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구상권 관리는 신용보증기금의 해당사업과 그 운영체계에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기술보증 사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사업과 전체 잔액의 6%내외 수준에서 지원대상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50%대를 초과했던 중복보증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결과이지만, 운영체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중복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임.
- 기업이 창업 이후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기술 개발여부에 따라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0%대로 중복보증 비율을 낮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더 지속적인 축소 노력과 함께 중복보증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실제로 경제위기 시가 되면 정부의 보증확대 정책으로 기관 간 경쟁적 지원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 중복보증 비율이 증가한 사례도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신용보증기금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실시간 체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보증연계투자, 구상권 관리 사업의 경우 기술보증 사업에 연계되어 후속 혹은 선행되는 사업으로 중복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구상권 관리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업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사사업을 시행하는 타 기관(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적정함.
  - 본 기금의 자체수입은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 구상채권 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조성 방법은 적정함.
-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은 적정함.
  - 본 기금은 차입금은 없으며 정부내부 수입 비중이 낮음.
- 재원과 목적사업간의 연계성은 기금의 지출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은 적정함.
  - 본 기금은 적정 기금 규모의 유지를 위하여 보증잔액의 최소 8% ~ 최대 12%를 유지하고 있음.
  - 과거에 있었던 정부내부수입은 향후에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상태서의 중기가용자산은 정부내부 수입 유입이 없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구상채권 회수 관리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회수 관리 및 자산관리 전문 공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의 매각 등을 포함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기술보증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비취볼 때 향후에도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목적 추구 과정에서의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적 운영측면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GDP 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보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민간부문과 분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중복 및 유사성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한 중복성·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1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설치년도	1972년	운용개시년도	1972년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기금관리주체	농협중앙회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함.
중기가용자산 과다	중기가용자산은 과다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일부 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한 추후 검토 권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세부 내용만 보완하는 수준에서 기금 존치의 타당성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 3. 존치평가 총평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을 통해 농림수산업자의 담보력을 보완하고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2년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기금의 용도로는 농어민 금융지원사업이 해당되는데, 개별 사업을 일반 보증사업(대출 보증, 상거래채무보증), 특례보증사업(재해대책자금, 부채대책, 농어업경영회생 자금, 사료구매자금), 우대보증사업(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보증, 청·장년 귀농(어) 창업 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보증, 농어업 다문화가족 보증), 구상권 관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본 기금은 2016년 현재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다만, 농어업 다문화가족 보증사업은 농림수산업자의 담보력을 보완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농어촌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금 목적과 부합되는 정도가 높지 않기에 추후 성과(2017년, 3년 동안의 사업 성과)를 평가 한 후 존치여부를 다시 엄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료구매자금사업은 축발기금의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과 수혜자가 동일하고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축발기금의 사료구매 대출액 중 본 기금의 담보 대출액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일시에 축발기금으로 통합할 경우 담보력이 미약한 축산·어업인들에게 미치는 과장이 적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해당 사업을 이관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본 기금은 금융기관출연금, 보증료 등으로 자체수입 비중 및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나 중기가용자산은 과도한 상태인바 먼저 16년에 예정되어 있는 농특회계 반환(3천억)이 이행된 후 추가로 공자기금 예치 또는 농특회계 반환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되, 기금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만기도래되는 공자기금을 농특회계로 반환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기금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 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 관련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기술적으로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 인정되는데, 특히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담보력이 상대적 열위에 있는 농림수산업자의 여건을 고려하면 본 기금 목적의 유효성이 높다. 다만, 기금 존치의 타당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해 기금사업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운영과정의 개선(보증료 인하, 적정 부실률 설정 및 관리 등)과 신규 사업의 도입(컨설팅 사업 강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기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의 사업 중 일반 보증사업(대출보증, 상거래 채무보증), 특례보증사업(재해대책자금, 부채대책,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사료구매자금), 우대보증사업(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보증, 청·장년 귀농(어) 창업 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보증), 구상권 관리사업의 설치목적은 유효함.
- 우대보증사업 중 농어업 다문화가족 보증사업은 농림수산업자의 담보력을 보완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농어촌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금 목적과 부합되는 정도가 높지 않음. 다만, 해당 사업이 2014년 관련부처 농신보 제도 개선 T/F(금융위 주관)에서 농어업종사 다문화 가정 보증 우대 조항 신설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아직 사업의 시행 초기인 점, 사회적 약자인 농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우대보증을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추후 성과(2017년, 3년 동안 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존치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농어업 다문화가족 보증사업은 기존 농림수산업자 중 외국인과의 혼인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동종업계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존 농어업인 중 다문화가족을 형성한 자가 수혜 대상자임.
  - 이는 해당 사업이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 확산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사업 설치 목적의 유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본 기금의 사업인 일반 보증사업(대출보증, 상거래 채무보증), 특례보증사업(재해대책자금, 부채대책,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사료구매자금), 우대보증사업(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보증, 청·장년 귀농(어) 창업 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보증, 농어업 다문화가족 보증), 구상권 관리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농어업금융의 정책 목적상 대위변제를 무상급부 형태의 직접적인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농림수산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의 우려가 있어 예산사업으로의 전환은 부적절함.
- 다만, 본 기금의 보증의 위탁기관인 농협 및 수협이 단위 조합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발생 우려 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의 사업 중 일반 보증사업(대출보증, 상거래 채무보증), 특례보증사업(재해대책자금, 부채대책,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우대보증사업(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보증, 청·장년 귀농(어) 창업 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보증, 농어업 다문화가족 보증), 구상권 관리사업은 예산·타기금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음.
- 특례보증사업 중 사료구매자금은 축발기금의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과 수혜자가 동일하고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당장 해당 사업을 축발기금의 사업으로 통합할 경우 발생하는 산업의 파장이 크기에 중장기적으로 해당 사업을 이관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사료구매자금의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사료 구매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신용 보증을 해주는 사업인데, 농가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주는 축발기금의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과 수혜자가 동일하고 사료 구매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 목적이 중복되어짐.
  - 다만, 현재 사료구매 대출액 중 본 기금의 담보 대출액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일시에 축발기금으로 통합할 경우 담보력이 미약한 축산·어업인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해당 사업을 당장 축발기금의 유사 사업으로 이관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이관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그 밖의 사업들은 보증지원이라는 사업 특성상 타 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세부사업들과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 문제가 일부 제기 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본 기금에서 사업 대상자의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타 신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받은 보증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보증지원의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적정함.
  - 본 기금은 금융기관출연금, 보증료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자체수입 비중은 적정함.
  - 금융기관 출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아닌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출연대상 금융기관은 예외없이 출연하여야 하는 부담금 성격이며 점차 규모는 줄고 있는 추세임.
  - 구상채권 회수액은 대위변제 누적액 대비 구상채권 회수율은 점차 둔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회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은 적정함.
  - 정부 내부수입 비중은 미미한바 적정함.
-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은 기금의 지출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정부 중기가용자산이 과도한 바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과도한 중기가용자산에 대하여 공자기금의 예치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다만 16년 농특회계반환(3천억)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선 이행하고 추가로 공자기금 예치 또는 농특회계 반환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되, 기금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공자기금을 농특회계로 반환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보증지원을 통해 농림수산업자의 담보력을 보완하고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 기금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됨.
  - 특히,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농림수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여건에서 본 기금목적의 유효성은 여전히 높음.
- 다만,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도입하고, 기금 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은 기금의 목적성 제고를 위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기금의 재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보증료를 하향 조정하여 농림수산업자들의 관련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임.
  - 불건전보증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기금의 재원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사업 운영으로 볼 수 있으나, 부실률을 0.3%에서 더 낮추거나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제 보증이 필요한 농림수산업자에게 문턱을 높여 기금 사업의 성과를 저해할 수 있기에 적정 부실률(예: 0.4 ~ 0.5%)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2015년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컨설팅 전문가 채용을 통하여 보증지원 수혜를 받는 농림수산업자들이 자신의 자금 운용 및 대출금 관리를 보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농어촌 경제의 발전을 위하는 본 기금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사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브랜드 농정과제로 적극 추진 중인 농업의 6차 산업화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담보력이 취약한 농림수산업자가 식품가공이나 관광 서비스업 등을 새로 시작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타 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 문제가 일부 제기 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은 농림수산업에 특화된 기금으로서 낙후된 농어업금융환경 하에서 농어촌 경제성장을 위한 설치 목적을 가지고 있어 타 기금에 대한 차별성이 인정됨.
- 특히, 본 기금에서 사업 대상자의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타 신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받은 보증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보증지원의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1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		
설 치 년 도	1976년	운용개시년도	1976년
주 무 부 처	금융위원회	기금관리주체	금융위원회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은행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 거
저축장려금 지급사업	개선 (조건부준치)	지원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한정하고 지원방식 및 수준을 재설정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금의 존치를 권고함.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본 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 출연금 50%와 일반회계전입금 50%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출연 방식에 관계없이 자체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체수입비중,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중기가용자산	해당사항 없음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조건부존치	<p>비실효적으로 낮은 연간저축한도로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됨. 지원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한정하고 지원방식 및 수준을 재설정 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금의 존치를 권고함.</p>

### 3. 존치평가 총평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1976년 영세농어민의 저축의욕을 고취하여 재산 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후, 1985년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정부출연금과 한국은행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저축장려금리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 본 기금은 저축장려금 지급을 통한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촉진이라는 단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목적의 실효적인 달성을 위한 기존 사업내용의 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986년 이후로 비실효적으로 낮은 연간저축한도와 매우 높은 저축장려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에 대한 사업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실효적으로 낮은 연간저축한도를 감안할 때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사업으로 평가되므로, 지원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한정하고 지원방식 및 수준을 재설정 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의 자체수입 비중은 한국은행 출연금은 자체수입으로 하여 50%로 적정하며, 총 기금 조성액 중 차입금 및 정부출연금의 비중은 50%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FTA 등의 환경변화로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이라는 기금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의 사업방식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한정하고 지원방식 및 수준을 재설정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저축장려금지급 사업의 추진근거는 명확하나, 연간저축한도의 적절성 여부 평가 등 사업의 지속적인 평가나 개선을 통한 노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고유 사업으로 설치목적 및 추진근거는 명확함.
- 기금의 설치목적인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저축장려금의 기여도에 관한 평가나 피드백 과정이 부족한 상태임.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저축장려금지급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에 연동한 연간저축한도의 상승 등 실효적인 저축한도의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인 금융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함.
- 부정수급과 관련한 제도개선노력은 인정되나, 수혜가구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저축행위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나 농어민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라는 면에서는 타 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으므로, 수혜 가구별 저축행위를 통한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 기여도에 대한 평가 및 홍보가 요구됨.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이 적정하고,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적정함.
  - 본 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 출연금 50%와 일반회계전입금 50%로 재원이 조달되며 한국은행 출연금은 자체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은 정부 내부수입으로 분류됨.
  - 한국은행 출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출연방식이 다를 뿐이고 실질적인 자체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국은행 출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을 자체수입으로 분류하면 자체수입비중,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 모두 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의 수익자 원인자 손피자 등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본 기금은 농어민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이전형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저소득 농어가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이라는 기금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의 연간저축한도와 금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한정하고 지원방식 및 수준을 재설정 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저축행위를 통한 저소득 농어가 생활안정 보조라는 기금의 목적은 타 기금과는 중복되지 않음.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1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설치년도	1987년	운용개시년도	1988년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기금관리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함.
중기가용자산 적정	중기가용자산은 적정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세부 사업들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중복성 우려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기금존치의 타당성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 3. 존치평가 총평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설치근거법 변경) 기금의 용도로는 국민의 주택관련 금융지원사업이 해당되는데, 개별 사업을 개인보증사업(전세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중도금보증, 건축·개량자금보증,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사업자보증사업(건설자금보증, 프로젝트금융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사업, 구상권 관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본 기금은 2016년 현재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다만,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사업은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라 역모기지보증재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공사의 자체 사업 또는 별도의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본 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 등으로 자체수입 비중 및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도 적정함. 과거 지적사항인 자체수입 증대에 따른 여유자금 과다에 대하여는 그 방안으로 금융기관 부담요율을 우대요율 체계를 도입하여 인하하였으나 향후 주택 시장의 추이를 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 본 기금은 기금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타 기금(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 관련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어 기술적으로 관련 문제점을 서둘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본 기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 인정되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담보력이 상대적 열위에 있는 서민들과 관련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하면 본 기금 목적의 유효성이 높다. 다만, 기금 존치의 타당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해 기금사업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운영과정의 개선(세부 사업 일부 조정, 보증료 인하, 적정 사고순증률 설정 및 관리, 특별채무감면의 운영 개선, 사업자보증사업의 리스크(risk)관리 강화, 유사 기금(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중복성 제기 문제 해결 등)과 신규 사업의 도입(컨설팅 사업 도입 등)을 통하여 기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의 사업 중 개인보증사업(전세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중도금보증, 건축·개량자금보증,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사업자보증사업(건설자금보증, 프로젝트금융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사업, 구상권 관리사업의 설치목적은 유효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본 기금의 사업인 개인보증사업(전세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중도금보증, 건축·개량자금보증,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사업자보증사업(건설자금보증, 프로젝트금융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사업, 구상권 관리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주택금융의 정책 목적상 대위변제를 무상급부 형태의 직접적인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주택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발생의 우려가 있어 예산사업으로의 전환은 부적절함.
  - 다만, 본 기금의 관리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의 발생 우려 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사업은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라 역모기지 보증재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공사의 자체 사업 또는 별도의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의 사업 중 개인보증사업(전세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중도금보증, 건축·개량자금보증,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구상권 관리사업은 예산·타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음.

- 사업자보증사업(건설자금보증, 프로젝트금융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 유동화 회사보증)은 타 신보(신용보증기금 등)의 세부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폐지하기 보다는 기술적으로 보완을 거쳐야 할 것임.
-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타 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에서는 사업 대상자의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타 신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지원받은 보증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중복 수혜 문제를 해결함.
- 따라서, 본 기금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서둘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적정함.
  - 본 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자체수입 비중은 적정함.
-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은 적정함.
  - 정부 내부수입 비중은 미미한바 적정함.
-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은 기금의 지출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이 적정함.
  - 본 기금은 과거 여유자금의 과다로 인한 개선 대책으로서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개편을 통하여 요율 인하를 시행하였으므로 여유자금 및 중기가용자산 과다의 문제는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금융기관 출연금 수입은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의 영향을 받는 주택 수요 금융에 기초하고 있으며 요율 인하는 향후 역으로 기금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축적이며 선제적으로 요율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아울러 금융기관 출연요율 인하 이외에 보증요율의 경우에도 인하 여력이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보증지원을 통해 주택 수요자의 담보력을 보완하고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 기금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됨.
  - 2014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3%로 높지만, 자가점유율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본 기금목적의 유효성은 여전히 높음.
- 다만,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도입하고, 기금 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은 기금의 목적성 제고를 위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전세자금보증사업은 최근 전세시장이 감소하고 월세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등의 주택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월세보증 관련 사업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야 함.
  - 기금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료를 하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관련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임.
  - 불건전보증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기금의 재원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사업 운영으로 볼 수 있으나, 사고순증률을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인 0.5%보다 낮은 0.4%를 달성하는 것은 실제 보증이 필요한 주택 수요 서민에게 문턱을 높여 기금 사업의 성과를 저해할 수 있기에 적정 사고순증률(예: 0.5%)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반면, 특별채무감면이 실질적으로는 정례화되고 있어, 채무자의 기대 심리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할 수 있기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타 기금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도입하여 기금 사업을 통해서 대출금을 수혜 받은 국민들이 자신의 자금 운용 및 대출금 관리를 보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보증사업(건설자금보증, 프로젝트금융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 유동화 회사보증)에 대하여는 향후 손실 발생 시 기금에 영향이 크므로 리스크(Risk) 관리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권고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타 기금(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 문제가 일부 제기될 수 있기에 기술적으로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일례로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은 신용보증기금기금 등과의 일부 중복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인수요자에 대한 보증이 98%인 상황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성 혹은 유사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기금에서 이미 하고 있듯이 본 기금에서 사업 대상자의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타 신보(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지원받은 보증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서둘러서 도입·운영하여야 함.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국 가 보 훈 처



## 2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1. 기금개요

설치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 30조		
설치년도	1968년	운용개시년도	1968년
주무부처	국가보훈처	기금관리주체	국가보훈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거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재원조성방법 적정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하고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함
중기가용자산 과다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 광복회관 재건축 소요자금 등을 감안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를 감안할 때 보유자산으로 향후 필수사업비 지출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일반회계전입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종적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출연 중단을 권고함.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p>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후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의 공익성이 충분함. 또한 생존 독립유공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금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p>

### 3. 존치평가 총평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본 기금)은 일제로부터 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박탈된 기회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기금은 1967년 제정된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현재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의 독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통된 임무라고 할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생존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본 기금의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이 국가귀속재산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기금의 존치 및 재원이 더욱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본 기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광복회관 재건축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의 개별 사업들을 민간이나 일반회계로 이전하지 않고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나 일부 개별사업(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회관 재건축 등)의 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5년 동안 일반회계전입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종적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출연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일반회계전입금의 단계적 축소 및 출연 중단을 반영한 중기자산운용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및 여유자금 운영수익을 주된 수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목적사업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당사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국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유공자들이 생존해 있거나 유족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점까지 존치되는 것이 타당하다.

- 본 기금의 미래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적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존 독립유공자의 수가 감소하고 유공자의 업적과 유족의 생활형편 사이의 연관성이 약화되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원 사업을 대신하여 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개발하거나 기금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사업,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사업, 광복회관 재건축사업 등의 설치목적은 유효함.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 가운데 손자녀 가계지원비 사업의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손자녀 가운데 1인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함.
  - 또한 생계비 지원의 기준(소득, 재산, 연령, 가구여건 등)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급여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바, 급여액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함.
  - 손자녀 가계지원비 사업의 목적이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소득지원이라면 대상자 선정과 집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타 예산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만일 사업의 목적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조상의 업적을 기리도록 하는 것이라면 더 많은 유족 및 후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지원사업 (예, 장학금 지급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은 기금 설치목적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과 지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보완이 필요함.
  - 당 사업은 건물이라는 부동산 자산의 재산가치를 증식시키는 사업인 바, 기금 투입의 결과로 증식되는 재산가치 중 얼마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해 명확한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임.

- 당 사업이 결과적으로 기금을 민간단체의 재산 증식에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보완(재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의 확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사업,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사업,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 등을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함.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에서 수행중인 사업 중 중복성·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㉔ 재원구조의 적정성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의 자체수입은 친일귀속재산의 매각대금, 여유자금 운영수익 등으로 조달되며 일반회계전입금이 일부 출연되고 있어 기금의 재원조성은 안정적임.
  - 본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친일귀속재산은 2015년 말 현재 670억 원 규모임.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5%로서 적정함.
  - 본 기금은 2013년까지 연간 53억 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을 출연받았고 2014년에는 51억 원, 2015년에는 37억 원으로 점차 출연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본 기금의 수익자 원인자 손피자 등 수입재원과 지출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본 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및 여유자금 운영수익을 주된 수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목적사업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의 단계적 축소 후 출연 중단을 권고함.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 및 자산부채 현황, 광복회관 재건축 소요자금 등을 감안할 때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본 기금의 중기수지추계를 감안할 때 보유자산으로 향후 필수사업비 지출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일반회계전입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종적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출연 중단을 권고함.
  - 본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의 단계적 축소 및 출연 중단을 반영한 중기자산 운용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음.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는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바, 기금의 존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함.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 생존 독립유공자의 수가 자연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기금사업의 형태로 독립유공자를 지원하는 것 역시 타당함.
  -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우선 사용토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본 기금의 존치가 바람직함.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기금사업의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관련기금(보훈기금)과 중복성 및 유사성이 없음.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2016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

---

발행일 : 2016. 5

발행처 : 기획재정부

(044) 215-53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44) 414-2447

인 쇄 : (주)삼일기획

(044)866-3011

---